

-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 -

#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충 주 시 의 회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 목 차

## I. 인감사고발생 및 소송업무추진상황

1. 양성인감사고 발생경위
2. 인감사고발생이후집행부의조치사
3. 손해배상소송업무추진상황
4. 손해배상 소송업무에 따른 탄원건의사항

## II. 특별위원회구성 및 조사실시 결과

1. 특별위원회 구성배경 및 조사목적
2. 특별위원회 구성
3.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사무의범위 및 조사방법
4. 조사기간
5. 조사실시경과
6. 조사결과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가. 조사결과
  -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 III. 특별위원회 차수별 운영상황 및 질의·답변내용

1. 특별위원회운영상황
2. 차수별 질의·답변내용
  - 가. 제3차 특별위원회('99. 4. 13.)
  - 나. 제4차 특별위원회('99. 4. 19.)
  - 다. 제5차 특별위원회('99. 4. 30.)
  - 라. 제7차 특별위원회('99. 5. 13.)

## IV. 부 록

1. 탄원서(충주시의회)
2. 기자회견 관련자료
3. 양성인감사고 관련보고서('99. 4. 1. 제2차 위원회)
4. 국가배상 심의서류
5. 양성인감사고 관련서류(양성면분)
6. 1심 판결문 사본1
7. 2심 판결문 사본

#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 I. 인감사고발생 및 소송업무 추진상황

### 1. 양성인감사고 발생경위

#### ○주민등록 허위 위장전입

- '96년 2월 12일 토지사기단 일당인 김종수(이명:조현근)와 가짜 원봉로(성명 불상자)가 원봉로의 위조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에 전입신고 하고자 하여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전입신고서를 대필 전입신고 완료

#### ○부정인감증명 4통 발급

- 구 거주지(평택시 현덕면)에서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도착전인 '96년 2월 13일 전날 전입신고한 가짜 원봉로가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신규 인감대장을 작성 4통을 발급

※'96. 2. 12 전산보조원 허근영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백만원 전달 및 수수

####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 대출

- '96년 2월 15일 가짜 원봉로(성명불상)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 부정 발급한 인감증명 4통과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원봉로 소유의 수원시 전선구 인계동 994의5 대 969.6㎡, 같은동 995의7 대 274㎡, 같은동 1123 대 648.5㎡, 같은동 1123의3 대 981.8㎡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 설정) 구본일(사기단)이 1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

#### ○신규인감대장 소각

- '96년 2월 17일 원봉로의 전 주소지(평택시 현덕면)에서 송달된 주민등록표로 인하여 2중으로된 인감대장중 신규작성한 인감대장을 소각처리함

○인감사고 발생 최초 사실 발견

- 진짜 원봉로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96년 4월 11일에 투표하러 갔다가 자신의 주민등록이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출된 것을 알고 '96년 4월 13일 양성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 허위 위장전입과 부정인감증명 발급 사실인지

2. 인감사고발생 이후 집행부 조치사항

○변조주민등록증 발견 보고

- '96년 4월 13일 양성면에서 변조 주민등록증 발견 및 부정인감증명 발급 상황을 충주시장(참조 : 시민과장,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감사담당관실 사건경위 조사 보고

- '96년 4월 13일 감사실에서 양성면 인감사고 경위 조사보고(충주시장)

○수사의뢰

- '96년 4월 15일 사문서 위조로 금융사기범 고발(충주경찰서)

○인감증명발급 철저 지시

- '96년 4월 16일 시민과에서 각 읍·면·동장에게 인감증명은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하고 일용직이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

○불법대출 확인

- '96년 4월 18일 양성면 호병계장 안순기씨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양성면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으로 구분일이 15억원을 대출한 이후 부인과 함께 독일로 출국 사실 확인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 구속

- '96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금융사기범 수사의뢰 (고발)하였으나 '96년 5월 6일 서울지검으로 사건 이송

· '96년 6월 3일 양성면 전산보조요원 허근영 구속 수감(100만원 금품 수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만원

### 3. 손해배상 소송업무 추진상황

#### ○배상금 지급신청

·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6년 11월 20일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694,925,414원을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서울고등 검찰청)에 충주시를 상대로 배상신청 하였으나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으로 '98년 6월 9일 기각 판결 하였음.

####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충주시에 배상 청구소송 제기

· 국배심 신청과는 별도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7년 4월 23일 충주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669,939,697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98년 2월 5일 대출금 15억에 대한 80% 상당 금액인 1,154백만원과 '96년 2월 15일에서 '98년 2월 5일까지 년 5분의 이자 114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

#### ○서울고등법원 항소

· '98년 3월 5일 충주시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계류중임(항소심 판결일 '99년 5월 19일)

#### ○항소심 판결 내용(2심판결)

· '99년 5월 19일 2심 판결에서는 '98년 당초 1심 판결에 비하여 충주시측의 배상 비율이 10% 낮아진 1,183백만원(원금 1,018백만원+이자 16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4. 손해배상 소송업무에 따른 탄원, 건의사항

- '97년 8월 18일 ⇒ 1심 담당 재판장 면담, 우리시 입장 전달  
(엄성현 총무국장, 홍순모 면장)
- '97년 8월 24일 ⇒ 양성인감사고 관련 충주시 배상 부당성 건의  
(재경원장관, 금융감독원장)
- '97년 9월 19일 ⇒ 탄원서 제출(청와대, 경제수석, 민정수석)
- '97년 10월 5일 ⇒ 동부지원 재판장 방문, 우리시 입장 전달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 '98년 10월 14일 ⇒ 이재화 헌법재판관 면담(기획행정국장)
- '98년 10월 14일 ⇒ 양성인감사건 관련 충주시 배상 부당성 건의  
(재경원장관, 금융감독원장)
- '98년 4월 20일 ⇒ 충주시의회 탄원서 제출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 이홍훈 재판장)

## II. 특별위원회구성 및 조사실시 결과

### 1. 특별위원회구성 배경 및 조사목적

#### ○ 특별위원회구성 배경

- 양성인감 불법 발급으로 인하여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충주시를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집행부에서 '99년 3월 2일 의원전체간담회시 보고
- 우리 의회에서는 급기야 '99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물 소집 사고 경위 및 소송업무 진척 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99년 3월 20일 제41회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부식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제의로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감사고의 경위와 사후조치

사항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 하였음.

○ 조사의 목적

- 인감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사고발생 이후의 집행부의 재발방지 대책, 소송업무추진 상황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충주시의회 의원 9명

○ 위원명단

직 위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위원장	총무위원회	이 화 영	
간 사	산업건설위원회	김 관 수	
위 원	총무위원회	이 중 원	
“	“	백 승 도	
“	산업건설위원회	임 영 현	
“	총무위원회	채 준 영	
“	“	박 인 규	
“	“	김 무 식	
“	산업건설위원회	권 훈 투	

3.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 조사방법

○ 조사대상

- 기 관 : 충주시
- 공무원 : 인감사고 관려부서 공무원(본청 및 양성면)
- 민간인 : 사고당시 관련자(본청 및 양성면 퇴직공무원)

○ 조사의 범위

- 인감사고 발생경위
- 인감사고이후 조치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
- 인감증명 발급 업무처리 실태
- 인감사고와 관련한 자체감사 및 관련직원 조치사항
- 인감사고에 따른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
- 패소시 구상금 청구 대책
- 재발방지 계획

○ 조사방법

- 충주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사건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사고 당시 관련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당시 상황 또는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패소시 향후 대책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응 방안 협의등

4. 조사기간 : 1999년 3월 20일 ~ 1999년 6월 8일

5. 조시실시 경과

구(차수)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고
○ 특별위원회구성 <제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99. 3. 20.	본회의장	○ 특별위원회구성 - 제안설명: 김무식의원 - 구성인원: 이학영의원 외 8명	
○ 제1차 위원회	'99. 3. 20.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간사선임 - 위원장 : 이학영의원 - 간 사 : 김관수위원  ○ 조사계획(안)의견 -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부서, 조사범위, 조사일정등 <제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제2차 위원회	'99. 4. 1.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양성인감사고관련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보고자 : 기획행정국장>  ○ 향후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 일정 및 증인채택	
○ 제3차 위원회	'99. 4. 13.	"	○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출석 - 출석증인(5명) : 전 양성면장, 전 양성면부면장, 전 양성면민원계장, 전 양성면 재증명담당, 전 양성면 전산업무보조 - 주요질의·답변요지 : · 소속직원 복무감독 및 업무분장 내용 · 인감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후 조치사항 · 인감증명발급 업무처리 실태 · 일용직의 인감증명 발급가능 여부 등  ○ 제4차 및 제5차 특별위원회운영협의 - 일정 및 증인채택	

구(차수)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고
○ 제4차 위원회	'99. 4. 19.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증언에 대한 질의·답변</li> <li>-출석증인(4명) : 전 감사담당관 2명, 감사담당관, 전 조사계장</li> <li>-주요질의·답변요지 : 인감사고 관련 감사내용 및 관련직원 조치 사항</li> </ul>	
○ 제5차 위원회	'99. 4.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증언에 대한 질의·답변</li> <li>-출석증인(3명) :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li> <li>-주요질의·답변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li> <li>· 소송업무추진 사항</li> <li>·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산보존 조치 사항</li> <li>· 폐소시 구상금 청구 계획등</li> </ul> </li> <li>○ 제6차 특별위원회운영협의</li> <li>-일시 : '99. 5월중</li> <li>-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시장</li> <li>○ 탄원서 채택</li> <li>-송부처 : 서울고등법원 인사 제3부(이홍훈 부장판사)</li> <li>-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실태와 문제점</li> <li>· 우리시와 소송 상대방의 과실 책임에 대한 부당성</li> <li>·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따른 배상능력 등</li> </ul> </li> <li>※전체의원(23명)서명제출</li> </ul>	
○ 제6차 위원회	'99. 5.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특별위원회일정협의</li> <li>-일자 : '99. 5. 13.(목) 10:00~</li> <li>-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총주시장</li> <li>-주요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인감사고경위 및 소송업무추진상황, 구상금 청구계획등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li> </ul> </li> <li>&lt;보고자 : 총주시장&gt;</li> </ul>	

구(차수)분	일 시	장 소	안 건	비고
○ 제7차 위원회	'99. 5. 13.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공무원(시장에 대한 질의·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공무원(1명) : 홍주시장</li> <li>- 주요질의·답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 늦게 보고하게 된 사유</li> <li>· 관련공무원에게 미정계 사유</li> <li>· 패소시 배상계획</li> <li>· 구상금 청구계획</li> </ul> </li> </ul> </li> <li>○ 제8차 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99. 6. 4.</li> <li>- 안건 : 보고서작성 및 채택</li> </ul> </li> </ul>	
○ 제8차 위원회	'99. 5. 25	운영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회견 : 오전 11시(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li> </ul> </li> </ul>	
○ 위원간담회	'99. 5. 31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li> </ul>	
○ 제9차 위원회	'99.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회의보고 : 제42회(임시회)제2차 본회의('99. 6. 8.)</li> </ul> </li> </ul>	

## 6. 조사결과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 가. 조사결과

#### ① 의회지연보고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배상예상금액이 14억여원의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고인지('96년 4월 13일)에서 1심판결('98년 2월 5일) 또한 항소심 판결일자('99년 5월 19일)가 도래되는 '99년 3월 2일 보고하므로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대처 기회를 일실 하였음.

#### ② 직원복무감독 및 일용직채용 소홀

- 각 읍·면·동에 전산업무 보조요원을 '94년 1월 1일 민원실에 근무케 함으로써 시본청 해당과 및 양성면장, 부면장, 민원계장등이 일용적인 허근영이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하였으며 허위인감 증명발급일인 '96년 2월 13일에 담당자 정구미를 아침 직원회의에 배석시켜 인감부정 발급의 원인이된 제도적 모순이 있었음.
- 전산보조원의 채용시 전산보조원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채용하였을 때 제증명담당 정구미가 전산업무를 일용직 허근영이 인감 및 제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채용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음.
- 사고전후일 인감증명 발급 현황

발급자	기간		계		'96. 1.~2.13일까지		'96. 2. 14.~4. 13일까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제증명담당 정구미	(921건) 89	(100%) 10	50	14	39	7		
전산보조원 허근영	525	57	226	62	299	54		
발급주장 정구미, 허근영	239	26	57	15	182	33		
타직원	68	7	32	9	36	6		

\* '96년 1월부터 ~ 4월 13일까지 총 인감발급 921건중 57%이상에 해당하는 525건을 허근영이 발급하였음.

#### ③ 인감증명발급 제절차 미이행

- 인감증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이 분실, 멸실, 훼손 또는 마멸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인감대장은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주소변경시 3일 이내에 구거주지에서 인감대장을 송부받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은 출원에 의한 인감신고시 신고인이 꼭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여 신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은 가짜 원봉로가 '96년 2월 12일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 전입신고후 '96년 2월 13일 인감발급신청시 원봉로의 전 거주지인 평택시 현덕면에서 인감대장을 송부받아 발급하였어야 하고 최소한 현덕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라도 인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

- 또한 신규 인감대장 작성시 본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와 해당 리장에게 전입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사례비 100만원을 수수하고 인감증명법의 재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음.

#### ④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절차 불이행

- 주민등록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시 지체없이 전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송부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의6에 의하여 주민등록표가 분실, 멸실, 오손, 마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양성면 허근영 전산보조원이 주민등록표 도착전에 주민등록표를 신규로 작성하였고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서에 의거 실제 거주여·부를 이장의 확인이나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음에도 '96년 2월 12일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에 전입 신고한 원봉로의 리·통장 사후 확인(리장 김성식 날인)과 담당자 공무원 정구미 확인 날인하였으나 사실거주여·부 미확인

- 전입신고시 원봉로 주민등록번호를 250203-1001319로 기재(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250203-1001619)신고하여 전산입력시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산입력 이후 검색하지 않았음.

#### ⑤ 민원직인 관리 소홀

- 면장직인(민원전용)은 민원계장이 직접 통제,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계증명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등 직인 사용의 관리, 감독에 소홀하였음.

#### ⑥ 사고관련 공무원 징계 절차 미이행

- '99년 4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회의시 계증명담당 정구미의 증언에서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 '96년 4월 14일 단 한차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바 있음」 등 감사담당관실과 해당과(민원봉사과)에서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후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중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었음.

- '96년 4월 13일 양성면에서 충주시청에 사고발생 경위보고 이후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 지방공무원법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음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법해석 착오로 관련자, 면장 홍순모('98. 6. 30일 퇴직), 부면장 안순영('98. 10. 31일 퇴직), 민원계장 안순기('98. 10. 31일 퇴직)가 대부분 퇴직하였고 관련자 정구미에게만 징계시효가 지난 '99년 2월 10일 훈계만 조치 하였음.
- 최소한 '98년 2월 5일 1심 판결 후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97년 4월 11일 징계의결 요구를 중지키로 하고 방치함으로써 대책반 편성등 소송업무 및 구상권행사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인감증명법상 증명청이 면장임에도 충주시 읍·면·동 전결사항 규정('95년 1월 4일 훈령 제46호)에 의거 담당자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치 않았음.

<충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업무와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적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이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 표시

⑦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준비 소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인감사고 판례등 유사사건시 배상청구액의 80~85% 배상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96년 4월 13일 사고발생 이후 1심판결일인 '98년 2월 5일 11억 5천 4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관련공무원과 금융사기법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가압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⑧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 미흡

- '96년 4월 13일 참모회의에서 인감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시장은 시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고도 사고대책반

구성이나 담당부서지정 및 의회보고 지연등 인감사고에 대한 초기 대책이 미흡 하였음.

- 진상규명 및 징계요구(감사담당관실)
- 소송업무수행(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 명예퇴직금 지급(총무담당관)
- 구상금청구준비(민원봉사과)
- 재발방지대책(민원봉사과, 감사담당관실)등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담 되어 본사고에 대한 종합대책반을 편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어야 함에도 본 의회특별위원회구성 이후 구상금 청구 준비 부서를 지정하는 등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 ① 의회보고 철저

- 시재정과 시민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

##### ② 일용직 채용 및 복무관리 철저

- 일용직 채용시 업무성격에 맞는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서를 징구하는등 별도의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③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제절차 철저 이행

- 주민등록 전출, 전입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관련 공부, 수불 및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위, 위장 전출·입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부서에는 수시 읍·면·동의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④ 인감등 제증명발급 철저 및 연대책임자 지정

- 인감등 제증명은 개인의 재산권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명청의 공인 사항으로 책임성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토록 하고 관련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강화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직상급, 차상급자를 지정, 연대책임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손해배상청구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⑤ 민원직인 관리 철저

- 각 읍·면·동에 사용하는 민원직인은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감독하에 사용, 보관하도록 조치

⑥ 비위행위자등 징계절차 철저 이행

- 양성인감사고 비위행위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합과 동시에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를 철저히 이행할 것

⑦ 구상금 준비 철저

- 배상금 대위변상 이후 관련공무원(퇴직자 포함)과 금융사기범에 대한 재산파악, 재산보존 조치등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상금 청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등 철저를 기할 것

### Ⅲ. 특위원회 차수별 운영상황 및 질의·답변내용

#### 1. 특별위원회활동 상황

○'99년 3월 2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으며

○제1차 특별위원회('99. 3. 20.)에서는

- 위원장(이학영 의원)과 간사(김관수 의원)를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조사계획(안)을 작성 채택 하였으며

○제2차 특별위원회('99. 4. 1.)에서는

-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사고발생 경위,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사항, 인감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소송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였고

○ 제3차 특별위원회('99. 4. 13.)에서는

- 홍순모 전 양성면장을 비롯한 안순영 전 부면장, 안순기 전 민원계장, 정구미 전 제증명담당, 허근영 전 양성면전산보조요원에 대하여 직원복무감독체계 제증명 발행경위 및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증언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 제4차 특별위원회('99. 4. 19.)에서는

- 전 감사담당관 2명, 현 감사담당관 및 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을 출석시켜 인감사고 발생과 관련한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등에 대한 증언과 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청취 하였으며

○ 제5차 특별위원회('99. 4. 20.)에서는

- 현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출석시켜 인감사고와 관련한 양성면 관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명에 퇴직수당)지급, 사고경위 및 의회에 늦게 보고한 사유, 소송업무 추진상황, 구상금 청구계획등에 대하여 증언과 질의·답변을 하였음.

○ 제6차 특별위원회('99. 5. 3.)에서는

- 양성인감사고경위 및 소송업무추진상황 구상금청구 계획등에 대한 보고를 충주시장에게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내용의 제7차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협의 하였고

○ 제7차 특별위원회('99. 5. 13.)에서는

- 충주시장으로부터 사고발생 시점에서 진행중인 소송업무 추진상황과 배상계획 및 구상금 청구계획등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바 있으며

○ 제8차 특별위원회('99. 5. 25.)에서는

-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협의 하였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바 있으며

○ 제9차 특별위원회('99. 6. 4.)에서

-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채택 하였음.

## 2. 차수별 질문·답변내용

### 가. 제3차 특별위원회('99. 4. 13.)

의원명	질 문		답 변	
	내	용	답 변 자	내 용
이종원 위원	○ 허근영의 임용과 근무실태는?		전양성면장 홍순모	○ 처음에는 재무계 업무보조를 하다가 성실하여 호병계 업무보조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임.
	○ 퇴직당시 퇴직금 신청 및 구상권등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 있는지?			○ 구상권 문제는 생각한바 없으며 퇴직시 20년이상 연금 신청시 차압에 대하여 질의 하였음.
김무식 위원	○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도 소속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허근영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 직원업무 분장은 담당계장 전결사항이며 정규적인 정규미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허근영이 면직 경위는?			○ '96. 6. 3일경 구속되어 '96. 6. 13일경 허근영 동생이 구치소를 방문사직서를 받아 와서 제출 하였음.
권혁부 위원	○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큰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인감증명은 정규직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직원복무 감독의 책임은 누구 한데 있나요?		○ 면전체 직원에 대한 책임은 면장임.	
	○ 정구미 업무는 무엇인지?		○ 인감업무외에 주민등록 업무를 맡고 있음.	
	○ 주민등록 현지 확인을 꼭 담당자가 출장가서 하는 것인지?		○ 마을별 담당직원이 확인할 수 있음.	
임병현 위원	○ 가짜 원봉로가 면사무소를 방문 전입신고 과정은?		○ 친절봉사 차원에서 나이가 많아서 허근영이가 전입신고서를 대서 하였음.	
	○ 정구미가 사고 당시 월요일이라 직원조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조회를 실시 하였으며 그때 직원조회 참석 여부는 기억나지 않음.	

질 문		질 문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박장열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장의 주요 업무는?</li> <li>○ 면장 근무 경력은?</li> <li>○ 일용직 채용은?</li> <li>○ 직원 감독의 체계는?</li> <li>○ 인감증명이 부정으로 발급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li> <li>○ 허근영이가 인감증명발급시 민원의 과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li> </ul>	전 양성면장 홍 승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23명의 직원을 감독</li> <li>○ '93. 10. 1. ~ '98. 6. 30일까지 5년정도 근무</li> <li>○ 면장이 하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여 근무토록 함.</li> <li>○ 1차 민원계장, 2차 부면장, 3차 면장등 상급자에게 있음.</li> <li>○ '96. 4. 13일 진짜 원봉로가 면사무소를 방문 전입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게 되었음.</li> <li>○ 면사무소내에서 소란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보고 받은 바 없음.</li> <li>○ 일용직은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 발급을 일용직이 발급할 수 있는지?</li> </ul>		전 양성면장 부면장 안 승 영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분장에 일용직이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사유는?</li> <li>○ 일용직이 인감증명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li> <li>○ 일용직의 복무 감독은?</li> <li>○ 업무내부 위임사항도 민사에 대한 책임 여·부는?</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전입후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시 민원인과의 소란이 있었다는데?</li> </ul>		
채준병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사무소에서 부면장 근무 내용과 임무는?</li> </ul>		

질 문		답 변	
위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은 부면장이 민원통제관이죠</li> <li>○ 민원처리 상황을 1개월마다 점검하여야 하는데 점검 하였는지?</li> <li>○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 하였는데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li> </ul>	전 앙성면 부면장 안 승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업무중 유기한 민원의 통제 관입니다.</li> <li>○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점검 하였음.</li> <li>○ 일용직은 발급할 수 없음.</li> <li>○ 몰랐음.</li> <li>○ 대장정리 사항등 일반적인 사항 만 파악 하였음.</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 허근영이가 인감증명을 발급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li> <li>○ 인감증명 발급대상 확인시 무엇을 확인 하였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 조회를 하였으며 개별 1명씩 민원담당자를 남겨두고 실시 하였음.</li> <li>○ 월요일이면 직원조회를 하였고 정구미 참석 여·부는 모르겠음.</li> </ul>
임병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li> <li>○ 인감사고 당일 직원조회 실시 여부 와 정구미 참석 여·부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의거 발생 여·부에 대하여 보았음.</li> <li>○ 민원인과 언쟁하는 것은 보지 못 하였으며 들은바도 없음.</li> <li>○ 업무분장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됨.</li> <li>○ 출장을 가지 않은 것 같음.</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볼 때 무엇을 보았는지?</li> <li>○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언쟁이 있었던 내용을 아는지?</li> </ul>	전 앙성면 민원계장 안 승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신고서 주만등록번호 하나가 틀린 것으로 기재되어 나중에 수정 하였는데 누가 하였는지?</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을 제증명발급 업무로 업무 분장한 것은?</li> <li>○ 인감증명발급 당일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출장을 갔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사고 발생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 1~2 나와서 조사 하였음.</li> <li>○ 인감사고이후 별도 지적은 없었고 일용직은 제증명발급을 억제함.</li> </ul>
임병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신고서 주만등록번호 하나가 틀린 것으로 기재되어 나중에 수정 하였는데 누가 하였는지?</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사고 발생후 감사 받은적이 있는지?</li> <li>○ 직원감독에 대한 지적은?</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박인규 위원	○인감증명을 관례상 일용직이 발급하고 있는 것을 면장, 부면장이 알고 있는지?	전 안 성 면 민 원 계 장  안 순 기	○관례상 발급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천혁부 위원	○인감증명발급 업무 담당자이면서 왜 일용직에게 발급토록 하였나?  ○인감증명대상 열쇠는 누가 보관 하는가?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이 상이한 숫자는 어떻게 수정 하였는가?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은?  ○전입신고시 리장이 확인 하였는지?		○내가 발령받기 이전부터 일용직이 발급 하였으며 인감증명 발급은 단순 반복 민원발급 업무임.  ○내가 담당하기 이전부터 허근영 씨가 보관  ○전입신고 온라인 정리시 수정 하였음.  ○'96. 2. 8. ~ '96. 2. 28.까지임.  ○전입신고후 사후 확인 사항으로 나중에 리장에게 직접 날인을 받았음.
임병현 위원	○전입신고 처리 절차는?  ○전산입력시 주민등록번호가 틀려도 입력 되는지?  ○인감사고 당일 직원 회의에 참석 하였는지?  ○마을 리장에게 확인 방법은?		○전입신고(신분증)→전거주지에 확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등 주소변경→전산처리→전산입력확인(민원처리기한 6일이내)  ○주민등록번호로 출력 또는 입력시 키지 않고 주소지와 성명으로 출력 동명인이 없어 주민등록 대조 없이 처리 하였음.  ○직원조회에 참석 하였음.  ○전입신고후 사실 거주여부를 확인함.
백승덕 위원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 하였다는데?		전 안 성 면 재 증 명 당 당 정 구 미
채준병 위원	○인감대상 발급시 누구 도장을 찍어 발급하는가?		○내도장과 면장직인을 찍어 발급함.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채준병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나?</li> <li>○ 인감사고에 대한 담당자로서 책임여·부는?</li> </ul>	전양성면 재증명담당 정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발급하기 이전부터 일용직이 담당 하였으며 양성면이 고향이며 민원인들과 좋은 관계였으므로 재 증명발급 민원 처리시 문제점이 없었음.</li> <li>○ 1차적인 책임을 통감 함.</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발급 때문에 가짜 원봉로와 시비가 있을 때 직원은 누가 있었나?</li> <li>○ 100만원은 어디서 받았나?</li> </ul>	전양성면 업무보조 허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사담당자 등이 있었던 것 같음.</li> <li>○ 주민등록 정리차 왔다갔다 할 때 책상위에 놓고 갔음.</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조회 참석 여부는?</li> <li>○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안되는데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li> <li>○ 인감증명 발급시 용도란에 기재한 것이 있나?</li> <li>○ 돈을 놓고 가서 의심한 적이 없나?</li> <li>○ 기존 인감대장과 재 작성한 인감대장에 도장의 차이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조회에는 참석하지 않음.</li> <li>○ 지시 받은적 없음.</li> <li>○ 없음.</li> <li>○ 의심하지 않았음.</li> <li>○ 인감도장이 같은 것으로 기억함.</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임 발령은 언제이며 업무 내용은?</li> <li>○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년 3월초 발령 받았으며 전산 업무보조와 재증명 업무를 보조 하였음.</li> <li>○ 내가 알아서 배웠으며 전 주민등록담당자 공효순이가 가르쳐 주었음.</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직 추천은?</li> <li>○ 원봉로가 가짜인지 의심한 적이 있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대후 재무계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보조 하였으며 면장이 일용직으로 추천</li> <li>○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진짜인지 알았음.</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채준병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출지에서 인감대장이 도착 되어야 발급 하는데 도착전에 발급한 이유는?</li> <li>○ 신규 인감대장을 소각한 시기는?</li> <li>○ 전입신고시 신청서 대필을 하였는가?</li> </ul>	전양성면 업무보조 허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거주지에서 인감대장을 만들지 않았다하여 신규로 만들고 발급 하였음.</li> <li>○ '96. 2. 17일 인감대장이 도착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새로 만든 인감대장을 소각 했음.</li> <li>○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나이가 많아 대필해 주었음.</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으로 임명한 면장과 제증명 발급 지시자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재창 면장이 발령 하였으며 제 증명 발급 지시자는 없었고 '92. 3월부터 인감중명동 제증명 발급을 하였음.</li> </ul>
임병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을 확인한 시기는?</li> <li>○ 마을 리장 거주 사실 확인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증 도착 정리 과정에서 알았음.</li> <li>○ 14일 이내에 확인</li> </ul>
이학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중명을 하나 발급 받는데 100만원씩 제공하는데 의심하지 않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음.</li> </ul>

나. 제4차 특별위원회('99. 4. 19.)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김무식 위원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 재직 기간은?</li> <li>○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양성인 감사사고와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은?</li> <li>○ 사법기관에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 받은 사례가 있는지?</li> </ul>	의회사무국장 이명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1. 1. ~ '97. 12. 31까지 임</li> <li>○ 양성인감사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징계중지 조치 하였음.</li> <li>○ 지적받은 적이 없고 타 시·군 모두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징계 처리하면 무혐의시 신분예 불이익이 갈수 있으며 중징계 사항을 경징계로 처리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2월 5일 판결로 충주시에서 80%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li> </ul>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10월 28일 정식문서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시효와 금품수수는 3년, 연대책임은 2년으로 적용 판단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규정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웠다고 타부서에 전출후 들었음.</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중 소송업무 진행시 판결 사항을 통보 받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송업무를 관장하는데 통보 받은바 없음.</li> </ul>
채준병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비중을 약하게 보지 않는지?</li> <li>○ 일용직이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시 개선 방안은?</li> <li>○ 정구미가 사고 발생후에도 계속하여 인원을 보아도 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지 않음.</li> <li>○ 일용직이 발급 개선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임.</li> <li>○ 연장이 판단 하여야 함.</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자한테 사고 인수 받은 사항이 있는지?</li> <li>○ 일용직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상급자 책임 여·부는?</li> <li>○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해당 업무 지도·감독부서에서 해야 할 것임.</li> <li>○ '96년 사건이후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박장열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감독체계가 되어 있는지?</li> <li>○ 일용직이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도 감독한 적이 있는지?</li> <li>○ 직원 정구미가 일용직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li> </ul>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처리체계는 되어 있음.</li> <li>○ 없음.</li> <li>○ 사건이 소송 진행중이므로 징계중지원 상태임.</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 근무는?</li> <li>○ 업무인계 인수 받았는지?</li> <li>○ 전 감사담당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li> <li>○ 사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가?</li> <li>○ 퇴직금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li> </ul>	감사담당관 이창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 9. 30일 발령 받아 현재까지임.</li> <li>○ 정식인계 인수는 아니고 직원들로부터 들었음.</li> <li>○ 징계중지는 문제점이 없으며 공무원비리를 통보 받은후 징계하지 않은 사항은 과실이 있다고 봄.</li> <li>○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징계하고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임.</li> <li>○ 연금법에 의거 퇴직금은 조치하기가 곤란한 것임.</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시점은 언제인지?</li> <li>○ 인감사고 징계 범위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에 비위사실 공무원 통보를 받고 1개월이내 처리</li> <li>○ 단독범행의 경우 차상급까지 징계할 수 있음.</li> </ul>
임병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무원 처리시 감사담당관이 협의하는 사항은?</li> <li>○ 인감사고 관련자 협의 요청하면 퇴직 가능한지?</li> <li>○ 구상금 청구시 연금등 구상권 할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표가 제출되면 징계대상과 대조 확인해 주는 것임.</li> <li>○ 협의 요청한 바 없음.</li> <li>○ 연금법에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사고 발생후 초등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는?</li> <li>○ 구상권에 대한 대비 조사는?</li> <li>○ 사고발생후 지속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li> <li>○ 인감증명 발급 책임은?</li> </ul>	교현2동장 조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수사권이 없고 담당자에 면담에 의거 조사하여야 하며 감사자가 조사에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li> <li>○ 허위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구상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음.</li> <li>○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공무원을 조사종일 때는 조사할 수 없음. -처음에는 허위 발급 되었지만 대출사기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음.</li> <li>○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며 감독은 주무부서 사항임.</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의 업무 내용은?</li> <li>○ 인감사고 주요 원인은?</li> <li>○ 사고발생후 시장한테 바로 보고 되었는지?</li> <li>○ 면장이 일용직이 발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계는 지시사항, 여론등 공무원 비리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음.</li> <li>○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아 일용직이 제증명을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li> <li>○ 예</li> <li>○ 면장도 알고 있을 것임.</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조사후 각 실과소별 담당업무 통보등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li> <li>○ 징계하지 않은 이유와 징계 중지한 이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부장 및 비위 사실만 조사하고 통보한 것은 없음.</li> <li>○ 수사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도에 질의한 바 있으며 도 및 타 시군도 같은 실정임.</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는 언제 하였는지?</li> <li>○조사 지시는?</li> <li>○시장에게 보고 하였는지?</li> </ul>	교현2동장 조 남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입신고 이의 제기후 즉시 조사</li> <li>○감사담당관실에서 하였음.</li> <li>○계룡을 받아 보고함.</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상권 행사 1심 판결후 준비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처리하려고 하였음.</li> </ul>
채준병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용직이 발급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실에서는 없음.</li> </ul>
이학영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계를 하면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지시를 받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생각임.</li> </ul>

다. 제5차 특별위원회('99. 4. 20.)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양성면장이 퇴직시 퇴직금 압류를 담당자에게 질의 하였는다는데?</li> <li>○ 전 양성면장, 부면장, 민원계장이 양성인감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li> </ul>	총무담당관 윤창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을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신청에 따른 상담이었음.</li> <li>○ 형사처벌 및 행정벌의 종료된 것으로 퇴직금을 조치하기 어려웠음.</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상권 책임은 생각해 보았는지?</li> <li>○ 2심 패소 대처 계획은?</li> <li>○ 소송처리 규칙 패소가 확실하다면 1심 판결전에 채권 확보가 가능한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인감사고와 관련 책임여부가 미정인 관계로 생각해 보지 않음.</li> <li>○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li> <li>○ 타 사건과 달리 과실 여부를 적용하는등 절차를 걸쳐야만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이라도 채권을 확보할 것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및 채권등은 변상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중이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구상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임.</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인감사고 관련자 퇴직시 보고하였는지?</li> <li>○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li> <li>○ 구상권으로 채권 보존 한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무원 징계사항등 지급유무를 협의 하였음.</li> <li>○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봄.</li> <li>○ 퇴직금을 일시금은 안되고 연금은 압류가 가능할 것임.</li> </ul>
임병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지급시 감사담당관실에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li> <li>○ 일용직 허근영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었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는 전제 협의하고 있음.</li> <li>○ 허근영이는 퇴직금 300만원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시 조치할 계획.</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실 차상급자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장임</li> </ul>	

질 문		답 문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인감사고 주무 부서는?</li> <li>○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li> <li>○ 구상권 행사 여부는?</li> <li>○ 충주시 책임 여부는?</li> <li>○ 고등법원 패소시 대책은?</li> </ul>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통제 하였으며 소송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li> <li>○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보고한다면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할 것임.</li> <li>○ 구상권은 주무과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반사항은 협의해 오고 있음.</li> <li>○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봄.</li> <li>○ 2심 패소시 년 이율은 25%이므로 배상을 하여야 하고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임.</li> </ul>
권학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는?</li> <li>○ 소송집행 중이라도 구상권을 안하는 이유는?</li> <li>○ 인사위원회 소관 부서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서울 관련기관 방문등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일용직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형의 없음으로 밝혀졌는데 꼭 징계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임.</li> <li>○ 구상은 대의 변제후 진행하여야 할.</li> <li>○ 총무담당관실</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이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담당관 소관이며 감사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임병헌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통제의 해석은?</li> <li>○ 대법원에 상고자료 준비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는 소송진행 방향에 개괄적인 사항으로 지휘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통제 하였음.</li> <li>○ 발령청에 대한 책임 여부는 부당하고 개인들의 행위에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인감증명 첨부는 구시대적 발상임. 인감증명 사무는 지방자치고유 사무가 부당</li> </ul>

질 문		답 변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봉사과장 재직 기간은?</li> <li>○ 민원봉사과에서 추진 대책은?</li> <li>○ 인감증명 발급 직원 교육은?</li> <li>○ 최근에까지 일용직이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li> <li>○ '98년도 1심 판결문을 본 사실이 있는지?</li> <li>○ 구상권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았는지?</li> <li>○ 이종직 발급에 대한 책임 한계는?</li> </ul>	민원봉사과장 최재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li> <li>○ '99년 4월 6일 종합대책반 편성시 구상권 담당팀으로 편성되었음.</li> <li>○ 민원처리 지도 감독 부서로서 매년초에 인감대장 취급 업무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있음.</li> <li>○ 정규직 담당자 아니면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보았으나 민원부서 소송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음.</li> <li>○ 발령되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부터 적극 추진 하겠음.</li> <li>○ 인감증명 발령청 음·면·동장 책임하에 있음.</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인감사고 전담자 지정 사항은?</li> <li>○ 관련자 재산 조사 실적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 수행공무원 지정한바 있음.</li> <li>○ 가족중 처·자의 재산 상황을 1차 조사 하였음.</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상권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99년 4월 6일 종합반 편성시 구상권 팀으로 결정 되었음</li> </ul>
백승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실과간 협조가 잘된다고 보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반을 편성하여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음.</li> </ul>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이 발급하여도 되는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발급 담당자 정부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li> </ul>

라. 제7차 특별위원회('99. 5. 13.)

질		답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권학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회의에 담당자 정구미가 참석을 한다면 그 시간에 민원인은 일용직이 발급을 해야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독자에게 그 당시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li> <li>○ 1심판결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징계위원회 및 구상금 청구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본 사고의 책임 부서는?</li> <li>○ 1심판결후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li> </ul>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당시 시 입장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대처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다소 소홀하였음. 또한 당시 허근영은 형사상의 문제로 경찰조사중에 있었음.</li> <li>○ '98. 2. 5일 1심판결이후 자체 징계를 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본질 보다는 항소문제에 많은 중점을 두었으며 책임문제는 시전체의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함.</li> <li>○ 물론 1심판결후 즉시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2심판결이 나고 채권 금액이 확정되면 실시하고 있음. 또한 채권 보존조치는 1심후나 2심후나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li> </ul>
김무식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고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지 않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li> <li>○ 구상금 청구 대상의 범위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을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고는 당연 하다고 봄.</li> <li>○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증명청이 면장이며, 권리주체의 의무가 시장이라서 소송업무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li> </ul>
이종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심판결후 월 이자가 24,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대책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에서 긴급부채 해야 할 사항임.</li> </ul>

질		답	
의원명	내 용	답변자	내 용
박인규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li> <li>○ 일용직이 인감을 발급했을 경우 상급자의 형사적인 책임은?</li> <li>○ 징계시기를 놓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은?</li> <li>○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한명도 없는데?</li> </ul>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시 사항으로 알고 있음.</li> <li>○ 형사적인 책임 여·부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임.</li> <li>○ 불도로 검토 하겠음.</li> <li>○ 확정판결이냐면 법에 의하고 차후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음.</li> </ul>
권혁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 1심판결후라도 최소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대책이 늦은 것은 아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99년 4월에 대책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음.</li> </ul>

# 충주시의회

우 380-700 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 전화(850-6622) 행 6622 / FAX 852-1378  
 의회사무국장 이명술 / 의사담당 김동환 / 담당자 박석배 (의회동 2층)

문서번호	사무 13130 - 286	취급		의 장
시행일자	1999. 4. 20. (3년)	보 존	3년	
(경 유)		부 의 장	김성영	박석배
수 신	내부결재	사무국장	이명술	특위위원장 이명술
참 조		의사담당	김동환	전문위원 김성영, 이명술
		★● 기안	4월 13일	의정담당 김성영, 이명술

## 제 목 양성인감사건 관련 탄원서 송부

양성인감사건관련 (주)동아상호신용금고의 국가배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충주시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감증명발급 실택 및 문제점, 시의 배상능력등 우리시 입장을 시민을 대표하여 불임과 같이 탄원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1. 송부일시 : '99. 4. 20.
2. 송 부 처 :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부(이홍훈 부장판사)
3. 내 용 : "불임" 탄원서 참고

불 임 : 탄원서 1부 끝.

# 충주시의회 의장

# 탄 원 서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 탄 원 서

존경하는 이 홍 훈 재판장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재판장님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탄원의 글을 올리게된 연유는 귀원 98나 13077호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우리시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선처를 구하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 4월 13일 우리시 양성면사무소 직원이 전문사기단에 기망당하여 허위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전문사기단은 그 인감증명서와 각종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여원의 거액을 불법대출 받아 도주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현재 귀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 1. 읍·면·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 실태와 문제점 입니다.

인감증명은 국회에서 제정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읍·면의 경우 증명청을 읍·면장으로 인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사무 담당자 전결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인감출원인이 인감 증명발급 신청을 하면 인감증명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자칫 큰사건에 말려들기 일수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한 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발급 관청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 주체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를 제외 하고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일부에서는 직원 봉급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인감증명·영조물관리하자등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하는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 공무원은 인감사무 담당을 서로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과 관련한 손해배상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에 구상권 행사와 형사 및 징계처벌로 많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거나 신분상,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각종 사기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감사기 사건도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의 사건도 전문금융사기단으로부터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이 기망당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인감사기범들은 첨단 사무장비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도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므로써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행 주민 등록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추진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 2. 우리시와 소송상대방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사건은 인감증명이 발급된 후 단 이틀만에 15억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된 사건으로 통상 금융기관에서 몇천만원을 대부하려면 상당기일이 소요되는데 거액대출을 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대출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에 대한 위험부담과 손해방지를 위하여 담보제공자의 본인의사확인, 대출규정, 신용조사규정 등 더욱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대출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우리시의 책임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면 많은 서류와 다수인의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대출서류의 하나인 인감증명에 대하여 증명청에 높게 과실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신용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금융거래는 개인의 신용상태와 거래실적, 자산정도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책임 하에 금융질서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보편적이며, 사적거래에 있어서 전적으로 당사자간에 그 과실책임이 훨씬 크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합치된다고 사료됩니다.

## 3. 우리시의 배상능력과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연간 지방세 수입이 334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우리시 공무원의 인건비 307억원을 사용하면 가용재원이 거의없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 만약, 1심 판결대로 14억여원을 배상하게 된다면 시운영에 파탄이 예상되며, 22만 충주시민이 균등할 주민세를 10년이상 납부하여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와 시위가 빗발치고 지방언론은 연일 책임규명을 보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청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전액 배상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부득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인감사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진상조사와 구상권행사등 다각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토지사기단과 인간증명 발급공무원의 재산이 전혀 없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민 대부분이 영세봉급자, 소농업인, 영세상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식학생, 실직자, 영세민, 장애인등 어려운 시민에게 쓰여져야 할 재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사기단과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진 사적거래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인감증명 발급책임을 이유로 전적으로 우리시가 배상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오니

이러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면 비등하는 지역여론을 감당할 길이 없는 점과 너무나도 억울한 점을 심분 고려하시어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과실책임을 최소화하여 주시거나 우리시의 책임한도내에서 각자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한 충주시의회 전의원이 간절히 바라오며, 재판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일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문서번호	사무13130-244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1999. 5. 25

★기안	◎의사담당	사무국장	부 의 장	의 장
	김동환	①(Com)윤		김기영
협 조	전문위원 김민정 특위위원장 허미하 변영희 이경삼 김희수 등			

-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

# 기자회전결과보고

## 충주시의회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 기자회견결과보고

「'99년 3월 20일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양성인감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대책 소송업무 추진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음」

## □ 개 요

- 일 시 : '99. 5. 25. 11: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참석의원 : 11명
  -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 8명
- 배석기자 : 12명
  - 방송사 : KBS 황상길, MBC 정재환, CJB 이한묵
  - 일간지 : 연합뉴스 민웅기, 충청일보 김주철, 중부매일 김상규, 동양일보 권대희, 충북일보 정구철, 대청매일 윤길상, 서충권
  - 주간지 : 충주신문 박상호, 예성신문 이선규
- 주 제 : 양성인감사고 및 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 □ 기자회견 내용

-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
- 양성인감사고발생경위사고내용전반
- 인감사고손해배상소송업무추진상황
- 인감사고조사결과등

## □ 질의·답변 내용 : 별첨

##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기자회견질의·답변

### <질의 : 연합뉴스 민용기기자>

- 양성인감사고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도 관련자들이 재산이 없다는데 이에 대책은?  
⇒ 구상권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이 사전 재산도피시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질의 : 대청매일 윤길상기자>

- 인감사고 후 3년이 경과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등 소홀히 한점에 대한 책임은?  
⇒ 지방선거등으로 인하여 은폐한 의혹은 있지만 시에서는 소송업무에 전념한 관계로 보고 및 징계등은 소홀히 한 것임.
- 의회경시풍조 및 인감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처 방안은?  
⇒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관계공무원 인사조치 요구할 계획이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임.

### <질의 : 충북일보 정구철기자>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후에도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당초와 변한게 없음.  
⇒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조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상급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이 요구되는 실정임.

### <질의 : KBS 황상길기자>

- 충주시에서 배상함에 따른 구상권 발동과 종합적 대책은?  
⇒ 패소판결로 년 25% 이자 부담이 있어 예비비에서 시일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구상권에 대한 전담부서가 지정되었으므로 적극 대처할 것으로 사료됨.

- 양성인감사고후 3년동안 보고 및 보도된 사항이 있는지요?  
⇒ 양성인감사고 발생 상황 보도 되었으며 3년간 소송진행 사항등에 관하여 없음.

<질의 : MBC 정재환기자>

- 양성인감사고후 3년간 은폐는 직무유기이며 의회에 미보고는 의회경시풍조로 곧 주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데?  
⇒ 지방자치법상 의회보고 의무는 없으며 은폐 이유는 소송에 전념하다보니 의회 보고는 소홀히 한 것이라하며 비고에 따른 의회 제재 권한은 없으나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음.
- 6급이상 공무원은 봉급에서 일정액을 공재하여 일부 부담이  
에 간부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며 또한 자발적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강제성 이라는데?  
⇒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 시세 낭비로 공무원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의견이 따르는 것이 민주사회임.

<질의 : 충주신문 박상호기자>

- 양성인감사고에 재발방지과 담당자 재정보증 등 제도 개선과 조례제정 용의는?  
⇒ 세계에서 한국, 일본만 인감제도가 있는 불필요한 제도로 인감 증명제도 폐지 건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관계는 집행부에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상위법등을 검토 하겠음.

<박장열의장 인사>

-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을 다해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림

1999. 5. 25.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 운영결과, 기자회견자료

총 주 시 의 회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기자 회견자료>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 (이 학 영)  
위원장 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양성인감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시에 많은 재정적 손실과 충주시의 위상 및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흠집을 내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회로써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민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성인감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새로운 정신과 각오로 일신하고 우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다짐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양성인감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 공무원의 책임 한계 및 소송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구성과 활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큰 사건이 1심판 결  
에서 11억 5천 4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99년 3월 2일 의원전체간담회의시 집행  
부에서 보고하여 '99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를 소집 사  
고경위와 소송업무진척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의 심각  
성 인식, '99년 3월 20일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경위  
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 소송업무추진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99년  
3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시본청  
및 양성면사무소 관련 직원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특히 제3차 특별위원회('99년 4월 13일)에서는 전 양성면  
장을 비롯한 양성면 관련자 5명과

-제4차 특별위원회('99년 4월 19일)에서는 전 감사담당관  
2명과 현 감사담당관, 전 조사계장

-제5차 특별위원회('99년 4월 20일)에서는 총무담당관, 기  
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대처 상황에 대한 증언과 질의·답변을 실시 하였고, 피  
해 최소화를 위한 탄원서를 채택하여 담당재판부에 송부  
하였으며

-제7차 특별위원회('99년 5월 13일)에서는 이시종 시장님  
으로부터 의회 지연보고 사유, 관련 공무원 미징계 이유  
와 패소시 배상계획, 구상금 청구계획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감사고발생 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96년 2월 12일 토지사기단 일당인 김종수와 가짜 원봉로(성명 불상자)가 원봉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입신고하고자 하여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전입신고를 대필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 원봉로의 전 거주지인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도착전인 '96년 2월 13일 원봉로의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가짜 원봉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 가짜 원봉로는 발급받은 4통을 가지고 서울에 소재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원봉로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하여 구분일이 15억원을 대출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 '96년 2월 17일 원봉로의 전 거주지인 평택시 현덕면에서 송달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으로 인하여 2중으로 된 인감대장중 신규로 작성한 인감대장을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소각함으로써 발급당시의 가짜 원봉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 진짜 원봉로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차 '96년 4월 11일 현덕면 소재 투표소에 갔다가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96년 4월 13일 양성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허위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양성면에서는 '96년 4월 13일 본청 시민과와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사고 발생을 보고하고 '96년 4월 15일 사문서 위조로 금융사기단을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96년 4월 18일 양성면 호병계장 안순기씨가 (주)동아 상호신용금고에 출장하여 양성면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으로 사기단의 일당인 구본일이 15억원을 대출 받아 사용후 부인과 함께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이후 양성면 전산보조원 허근영은 '96년 6월 3일 서울지검에서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 세 번째 손해배상소송 업무 추진 상황으로

-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6년 11월 20일 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6억 9천 4만원에 대하여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주)동아상호신용금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98년 6월 9일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 이와는 별도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97년 4월 23일 충주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6억 6천 9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8년 2월 5일 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80% 상당 금액인 11억 5천 4백만원과 이자 1억 1천 4백만원 등 12억 6천 8백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98년 3월 5일 우리 시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99년 5월 19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80%에서 70%로 하향 된 원금 10억 1천 7백 8십만원, 이자 1억 6천 5백 6십만원 도합 11억 8천 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음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사유재산 이동등에 중요한 증명원인 인감증명 발급을 공무원법상 아무런 신분 보장도 없는 일용직에게 인감증명법, 주민등록법등의 사전 교육이나 재정 또는 인우 보증의 사후보장책도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업무를 보조케 하고
- 일용직에 대한 업무 감독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면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등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이지 못하였고
- 본건 사고후 본건과 관련된 당사자, 직상급자, 차상급자, 면장등에 명확한 책임 규명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의 징계등을 미루어 그 시효를 일실한 상태에서 본건 관련자 대부분이 퇴직등으로 공직을 떠난 상태임으로 향후 배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 되며
- 본건 발생후 우리시를 상대로 인감의 부정 발급을 원인으로한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판례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액의 배상이 예상 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과 관련된 사기단과 공직자등을 상대로 재산의 조사, 가압류등 재산보전 조치가 전혀 행하여지지 않았고, 구상권에 따른 재판권 행사의 부서도 결정하지 못한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 된후에야 논란끝에

책임부서를 정하는등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이 결여 되었음이 밝혀 졌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등 재판권 행사에 완벽을 기하고
- 각 읍·면·동의 인감증명발급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후 보장책등을 강구하는등 인감발급 체계를 재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 시 본청에서 각 읍·면·동의 업무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수시 본청 각 실국에서 각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 감독체계도 확립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본인의 책임 뿐만 아니라 상급자, 차상급자등을 정하여 연대책임할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업무에 경·중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재정 보증서를 징구하는등 별도의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사고 발생후 3년여가 경과 되도록 의회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음은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관치시대의 잔재이므로 향후 시정을 촉구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시의 위상 추락과 시민 자긍심을 크게 훼손시킨데 대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회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점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25 일

충주시의회 양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 학 영**

'99. 4. 1  
양성인감사건특위

# 양성인감사건관련보고

총 주 시

# 양성인감사건의회특위보고자료

## I. 인감사건 발생개요

- '96. 2. 12 금융사기단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6-3거주 원봉로)을 지참하고 양성면으로 위장전입 신고하면서 양성면 일용직 허근영에게 금품 일백만원을 제공하고
- '96. 2. 13 허근영이 원봉로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이 도착하기 전에 인감대장을 신규로 작성하였고, 금융사기단은 불법으로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를 사용 서울 송파구 소재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 대출  
⇒ 가짜 원봉로는 본인의 인감을 분실하여 개인신고를 하여야 하니 신규 인감신고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에 허근영이 기망
- '96. 2. 17 주민등록 관련서류 도착후 접수된 인감대장의 인감과 신규 작성한 인감이 상이하자 허근영이 신규 작성한 인감대장을 소각 파괴
- '96. 4. 11 진짜 원봉로가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본인의 주민등록이 양성면으로 진출된 것을 확인하고 '96. 4. 13 양성면사무소에 찾아와 사실 내용 확인결과 허위인감증명 발급사실 발견
- '96. 4. 22 양성면장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 원봉로의 인감증명의 불법 발급사실 통지

## II. 소송업무 추진상황

### 민사사건

#### □ 그간의 추진상황

- 96. 9월~10월 양성인감사건 대응방안 법률자문  
= 관내변호사, 청주·대전지검 공익법무관, 오종운판사, 박충근변호사
- 96. 11. 20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국가배상지급신청(서울지구심의회) /
- 97. 3. 14 박충근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국배심, 민사1심)  
※ 재경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 97. 3. 15 소송담당자 지정 (남기형, 라연찬, 안순기)
- 97. 3. 31 원고 (주)동아상호신용금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1. 구본일, 최영균, 은경섭과 피고2. 충주시를 당사자로  
하여 김·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손해배상금  
1,669,939,697원 청구 제소 /
- 97. 5. 8 최초변론 (국배심서류진술, 쌍방증인신청)
- 97. 6. 19 2회변론 (이주창 증인신문)
- 97. 7. 10 3회변론 (허근영 증인신문)
- 97. 7. 31 4회변론 (원고측 과실입증, 손해배상액산정 부당주장)
- 97. 8. 16 구본일 면회 (의정부교도소)
- 97. 8. 18 담당재판장 면담 우리시 입장전달  
(엄성현 총무국장, 홍순모 면장)
- 97. 8. 24 양성인감사건관련 건의 (재경원장관, 금융감독원장)
- 97. 9. 19 탄원서 제출 (청와대 경제수석, 민정수석)
- 97. 10. 5 동부지원재판장 방문 우리시 입장전달 (엄성현, 신희기, 이은태)
- 97. 10. 7 탄원서 회신 (은행감독원)  
⇒ 은행법 및 금융기관감독규정에 의거 관여불가

- 98. 2. 5 1심 판결선고  
(피고 과실상계 80%로 하여 1,154백만원 연대배상)
- 98. 2. 14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공탁 (2억원)
- 98. 3. 5 강제집행정지결정 (동부지원)
- 98. 3. 6 항 소 (서울고등법원)
- 98. 5. 6 항소심 최초변론
- 98. 6. 5 원고의 국가배상지급신청 기각결정
- 98. 6. 7 항소심 2회변론 (국배심 결정자료 입증)
- 98. 8. 19 항소심 3회변론
- 98. 9. 23 항소심 4회변론
- 98. 10. 14 이재화 헌법재판관 면담 (기획행정국장외 2인)
- 98. 11. 4 항소심 5회변론
- 99. 1. 27 항소심 6회변론
- 99. 3. 10 항소심 7회변론 (과실상계 부당주장)
- 99. 4. 28 항소심 8회변론 예정

#### 향후 대응계획

- 인감증명사건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자료 및 판례 수집으로 항소심 지속 대응
- 항소심 판결후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 검토

## 형 사 사 건

### □ 그간의 추진상황

- 96. 4. 13 제15대총선 투표사무 과정에서 주민등록위조 및 인감증명 부정 발급사실 발견
- 96. 4. 15 사문서위조로 금융사기범 고발 (충주경찰서)
- 96. 4. 25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기범 고발 (서울지검)
- 96. 5. 6 서울지검으로부터 충주경찰서에 사건이송 지시
- 96. 6. 3 허근영 구속
- 96. 6. 13 정구미 서울지검 출석조사
- 96. 6. 21 최영균, 온경섭 구속
- 96. 7. 31 구본일 구속 (독일에서 귀국자수)
- 96. 10. 24 형사판결 (서울지방법원)
  - 구본일 : 징역 4년6월
  - 최영균 : 징역 4년
  - 온경섭 : 징역 2년
  - 허근영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97. 8. 27 검찰총장 탄원서 제출
- 97. 9. 3 이주창, 한기선 배임관련 고발 (서울지검)
- 97. 11. 27 서울지검 방문 (기획담당관)
- 97. 12. 19 서울지검 2차방문 (기획담당관)
- 98. 10. 14 이원성 대검차장, 정동욱 검사, 담당검사 방문 (수사재개 및 적극수사 요청)
- 98. 11. 17 담당검사 방문 (법무담당)
- 98. 12. 21 이주창, 한기선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 99. 1. 20 배임관련 고발사건 항고 (서울고검)
- 99. 2. 10 항고인 진술 및 우리시 입장전달 (서태경 검사)

### □ 향후 대응계획

- 서울고검 형사고발 항고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에 재항고 여부 검토

### Ⅲ. 양성면 인감증명사건 조사(감사)결과

'96. 2. 13 발생한 양성면 인감증명부정 발급사건에 대하여 '99. 3. 15 개최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양성면인감사고관련 소송사무보고"시 당시 비위행위자인 전산보조원 허근영과 담당자인 정구미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필적인 동일인것으로 보임) 하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임.

#### 1. '96 인감증명사고 발생개요

- '96. 2. 12 토지사기단 일당(김종수와 가짜 원봉로)이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6-3번지 원봉로(73세)의 위조주민등록등을 제시하며, 양성면 능암리 343번지로 전입신고코자 하는데 복잡하니 직접 써달라고 요청하자 전산보조원(일용직)인 허근영이 전입신고서를 대서를 해주고 주민등록증 이면의 전입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정구미 도장을 찍어 주민등록증을 완성한 후 주민등록전산망(컴퓨터)의 원봉로 인적사항 및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 등재하고 전입신고서 하단의 전산처리란에 정구미 도장을 찍어 전입신고 처리를 완성한 바,

전입신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입신고서의 원봉로 실제주민등록번호는 250203 - 1001619인데  
250203 - 1001319으로 1자가 상이하고  
전화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음 (96. 4. 13 인감사고발생후 정구미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정정함)

- 다음날인 '96. 2. 13 허근영은 전출지인 평택시 현덕면으로부터 원봉로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등 공부가 송달되기 전일에도 불구하고 토지사기단 일당이 급하고 바빠서 그러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 전입지에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도착하여야 이를 확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근영이 이를 무시한 채 신규절차를 밟아 담당자 정구미 도장(私印)과 면장직인(민원용)을 찍어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하였음.
  - '96. 2. 17 전출지로부터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등 공부가 송부되어 오자 공부를 정리할때 인감대장이 2부임을 알고 신규 작성한 인감대장을 소각하였음.
- ※ 전산보조원 허근영은 '96. 2. 12 전입신고 처리후 토지사기단 일당들로부터 1백만원의 금품수수(자기앞수표)하고 인감증명서 4통을 부정발급한 것이 수사결과 밝혀졌음.
- 그후 '96. 4. 11 국회의원선거 투표과정에서 자기의 주민등록이 타인에 의해 전출된 사실을 인지한 진짜 원봉로는 '96. 4. 13 양성면을 방문하여 신고 하므로써 위 인감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 토지사기단 일당들이 '96. 2. 13경 위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96. 2. 15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의 대출금 편취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임.

## 2. 인감사고발생경위 및 세부조사내용

### 가. 인감사고발생경위

- '96. 2. 12 : 허위주민등록 전입신고
  - 토지사기단 일당인 김종수(이명 : 조현근)와 가짜 원봉로 (성명불상자)가 위조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 전입신고
  -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전입신고서를 대필해주고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변경 정리해 줌.

- '96. 2. 13 : 부정인감증명 4통 발급
  - 진출지로부터 주민등록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등) 도착전에 허근영이 신규인감 신고수리 인감증명 4통을 부정 발급
  - ※ 검찰조사시 허근영이 사례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 ('96. 2. 12)
- '96. 2. 17 : 주민등록등 관련공부 송달 (평택시 현덕면 → 양성면)
- '96. 2. : 신규인감대장 소각 (허근영)
  - 진출지에서 송부된 인감대장과 신규작성된 인감대장 이중임을 발견하고 허근영은 신규인감대장을 자체 소각하였음.
- '96. 4. 11 : 진짜 원봉로가 주민등록 진출된 것을 인지
  -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일 '96. 4. 11 진짜 원봉로가 평택시 현덕면에 투표차 갔다가 본인의 주민등록이 양성면으로 진출된 것을 인지
- '96. 4. 13 : 진짜 원봉로가 양성면사무소 방문신고로 양성면직원 인지
  - ⇒ 양성면장이하 담당공무원은 허위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부정 인감증명 발급사실 인지

나.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및 현근무상황

구 분	주 소	성 명	직 위 (급)	비 고 (현근무처)
감독자	충주시 양성면 마련리 68	홍 순 모	면 장 (별정 5급)	퇴 직 ('98. 6.30)
"	충주시 양성면 조천리 303	안 순 영	부면장 (행정 6급)	퇴 직 ('98.10.31)
"	충주시 연수동 754-8 (현) 인천 남구 주안 1431- 27 ('99. 3. 15전입)	안 순 기	민원계장 (행정 6급)	퇴 직 ('98.10.31)
담당자	충주시 용산동 885 부원연립 302	경 구 미	행정 8급	목행동 ('97. 1.31)
보조원	충주시 양성면 둔산리 178 (현) 충주 칠금 교오릉 동신A 106-302	허 근 영	전산보조원	퇴 직

다. 관련공무원의 지도감독 책임여부 검토

1) 읍면동전결사항규정 및 업무분장, 인부사역결의 등 확인

○ 충주시 읍면동 전결사항 규정(95. 1. 4 훈령제46호)

- 읍·면 위임 전결사항 (별표 1)

계 별	단 위 업 무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당자	계 장	부읍면장	읍면장
공 동	1. 복무  (주민등록) (인 감)	1. 출장명령 가. 계장급이상(관내·외) 나. 소속직원의 관내출장 3. 계장급이상울 제외한 소속 직원의 복무 5. 계의 사무분장 18.전입신고 30.인감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31.인감증명 발급신청 및 교부 32.인감개인신고				
			○	○	○	○
			○			
			○			
			○			

○ 민원계 업무분장 확인

일 시	직 위(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93.11.10	호 병 계 장	안 순 기	호적업무	
	지방행정 7급	홍 진 기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지방행정 8급	정 구 미	주민등록업무, 제증명업무	'92. 1. 8 일 용
	일 용 직	허 근 영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일 시	직 위(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94.11. 4	호병계장 지방행정 7급 지방행정 8급 일 용 직	안 순 기 홍 진 기 정 구 미 허 근 영	호적업무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주민등록업무, 제증명업무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95. 1.28 인사발령	지방행정 7급 지방행정 8급 지방행정 9급	홍 진 기 정 구 미 최 광 회	※ '94.11.4이후 변동사항 없음.	
'96. 2.13			※ '96인감증명부정발급 사고발생	
'96. 4.24	호 병 계 장 지방행정 7급 지방행정 8급	안 순 기 홍 진 기 정 구 미	호적 병무, 민방위 주민등록, 제증명	

○ 전산보조원 허근영 인부사역결의 확인

- 일용직 근무자 현황파악 보고 : 허근영 최초임용일 '90. 3. 15로 명시됨.  
(근거서류 없어 확인 불가)
  - 양성 12100 - 158 (96. 1. 22)
- 인부사역결의 : 91. 4. 15 (토지과표조정 및 기타물건시가조사)
  - 사역기간 : 91. 4. 15 - 91. 7. 12(75일간)
-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 사역결의 : 92. 3. 2
  - 사역기간 : 92. 3. 2 - 4. 30(60일간)
-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 사역결의 : 93. 10. 28
  - 사역기간 : 93. 11. 1 - 11. 30(26일간)
-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 사역결의 : 93. 12. 31
  - 사역기간 : 94. 1. 1 - 12. 31까지
- 주민등록전산보조인부 사역결의 : 94. 12. 31
  - 사역기간 : 95. 1. 1 - 95. 12. 31까지
-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 사역결의 : 95. 12. 30
  - 사역기간 : 96. 1. 1 - 96. 6월까지
- 주민등록전산관리요원 해임 : 96. 6. 17
  - 사직원제출 (허근영)
- 허근영의 신원조회여부 확인(경찰서 조회)
  - 신원조회 관련서류 없음(확인불가)

## 2) 관련공무원별 지도감독 책임여부 검토

### 가) 전산보조원(일용직) 허근영 근무상황

○ 3년간 전산보조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상급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음.

- '90. 3. 15 최초 양성면에 일용직(사역결의 없음)으로 임용된 이후 '92. 3. 2부터 '96. 2. 12까지 3년간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으로서 인감 증명발급업무를 보조해 오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상급자의 신뢰를 받아 인감증명 부정발급 등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사료됨.

○ 면장직인(민원용) 및 담당자 정구미도장(사인)을 감독자 통제없이 사용 가능하였음. (통제 및 감독소홀)

- 면장직인(민원용)은 시용빈도가 많아 민원계장이 직접 통제치 않고 민원실 담당자 책상에 두어 언제나 사용 가능했고 담당자 도장(사인)은 전산실용과 민원실용 2개 사용으로 평상시 허근영이 정구미 도장을 통제없이 사용해 왔음.

○ 토지사기단 일당들로부터 금품제공 유혹에 넘어감.(공직관 및 사명감 결여)

- '96. 2. 12 전입신고가 끝난 토지사기단 일당이 나가면서 허근영에게 흰봉투(1백만원) 주고 감.
- 다음날인 '96. 2. 13 전출지에서 인감대장등 관련공부가 송부되지 않았음에도 토지사기단 일당들의 신규인감 증명발급 요구에 대해 전날받은 금품수수에 현혹되어 과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하게 됨.

○ 허근영의 가정생활은 중립

-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었음. (형이 있으나 능력미흡)

나) 담당자 행정8급 정구미

- 인감증명발급업무는 담당자 행정8급 정구미이나 타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거의 전담해 왔음.

<'96 인감증명발급 현황>

- '96. 1 ~ 2. 13까지 발급건수 : 365건
  - 정구미 50, 허근영 226
  - 정구미, 허근영 모두 발급주장 : 57건
  - 타직원 : 32
- '96. 1 ~ 4. 13까지 발급건수 : 921건
- ※ '96양성면 인감증명 발급현황 참조

<정구미 업무확인>

- 민원업무일지 (요약)

창 구 민 원	구 분	총정리 건 수	신 고 민 원			재 증 명					
			주민 등록	호 적	병 사	계	주민등록 등초본	호 적 등초본	인 감	신 증 원 명	기타
	96. 2.12	131	6	7	3	115	67 (5)	23 (6)	20	1	4
	96. 2.13	122	4	3	-	115	68 (20)	25 (7)	11	-	4
	누 계	3,717	138	153	28	3,398	1,742 (254)	641 (299)	820	12	183

- ※ 누계는 96. 1 ~ 2. 13까지임.
- ( ) : 주민등록 초본임.

<인감증명담당자로서 소홀히 한점>

- 허위전입여부 확인소홀
  - 원봉로의 주민등록번호 1자가 상이 :  
250203 - 1001619를 250203 - 1001319로 기재됨.
  - 전화번호 미기재
- 면장직인(민원용) 및 사인(정구미도장) 관리소홀

## 다) 민원계장 안순기

### <소홀히 한점>

- 민원계직원 업무분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허근영은 전산보조원으로 전산 및 제증명보조로서 인감증명발급 자격이 없음에도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면장직인(민원용)관리 감독소홀

- 인감증명발급 등 민원발급시 면장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전산보조원 업무보조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

## 라) 부면장 안순영

### <소홀히 한점>

- 소속직원의 관내출장 등 복무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상황부에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복무감독 소홀

- '96. 2. 12 ~ 2. 13 민원계장 안순기, 담당자 정구미는 관내에 출장한다고 결재를 득했으나 검찰신문조서 및 문답서 등을 살펴보면 당시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직원지도감독 소홀

## 마) 양성면장 홍순모

### <소홀히 한점>

- 직원총괄 지도감독 소홀

## 라. 주요의문사안 확인내용

### 1)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필적확인 (정구미, 허근영)

#### <확인방법>

- 담당자 정구미, 전산보조원 허근영을 감사담당관실로 출석시켜 양성면의 인감대장 발급대장(원장)을 보여주고 인감대장발급대장 사본에 비고란에 작성자 이름을 쓰도록 하고 날인을 받아 확인 서명토록 하였음.

#### <확인결과>

##### - 발급건수

• '96. 1 ~ 2. 13까지 :	365건
· 정구미	50(14%)
· 허근영	226(62%)
· 정구미, 허근영 모두작성주장	57(15%)
· 기 타(타직원)	32(9%)
• '96. 2. 14이후 ~ 4. 13까지 :	556건
· 정구미	39(7%)
· 허근영	299(54%)
· 정구미, 근영 모두작성주장	182(33%)
· 기타(타직원)	36(6%)
• 합 계 :	921건
· 정구미	89(10%)
· 허근영	525(57%)
· 정구미, 허근영 모두작성주장	239(26%)
· 기 타(타직원)	68(7%)

- 위 정황으로 보아 인감증명발급은 허근영이 거의 전담해 왔다고 판단됨.
- ※ 정구미, 허근영 모두 자기 필체라고 주장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으나  
본사건관련 발급일련번호 362번, 발급일 '96. 2. 13 원봉로 필체는 허근영이  
확실히 함.

2)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실을 정구미를 비롯한 타직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허근영의 단독 위법행위(허위공문서작성)이었음이 명백함.
- ※ 전입신고서(민원)의 원봉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적색으로 삭제하고  
정정한 것은 '96. 4. 13 인감사고인지 한 후에 정구미가 보완 정정하였음이  
확인됨. (검찰조서, 문답서 참조)
- '96. 4. 13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전입신고서사본에도 정정한  
부분은 없었음.

3) 당시 '96. 2. 12 ~ 2. 13 담당자 정구미, 민원계장 안순영의 관내출장 여부

- 정구미, 허근영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와 문답서 등 종합해 볼때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4) 주민등록번호 1자상이한점 사전인지 여부

- 전입신고 검토시 위장전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면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  
했다고 판단되나 정구미, 허근영 모두 '96. 4. 13 인지했다고 주장함.

마. 관련공무원 문책

○ 관련공무원 문책양정

소속	직위(급)	성명	문책사유	재직기간	징계양정(기준)	비고
양성면	면장 (지방별정 5급)	홍순모	○ 직원 총괄지도감독소홀	93. 7. 1 - 98. 6. 29	경고	98. 6. 30 정년퇴직
	부면장 (지방행정 6급)	안순영	○ 직원 복무지도감독 소홀	94. 5. 6 - 98. 9. 30	주의	98.10.1-98.10.30 (총무담당관실) 98. 10. 31 영퇴
	민원계장 (지방행정 6급)	안순기	○ 주민등록전입 업무관리 감독 소홀 ○ 인감증명발급 담당직원 지도감독소홀 ○ 직인관리 감독 소홀	92. 1. 18 - 98. 9. 30	훈계	98.10.1-98.10. 30 (총무담당관실) 98. 10. 31 영퇴
(현, 목행동)	담당자 (지방행정 8급)	정구미	○ 허위전입신고 여부확인 소홀 - 주민등록번호1자상이 - 전화번호미기재 ○ 사인(私印) 및 직인관리 소홀	92. 7. 18 - 97. 1. 30	경징계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 허근영 단독행위	금품수수 행위자가 아니므로 징계시효를 2년으로 보아야함

※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은 퇴직으로 문책을 이행하지 못하였음.

○ 담당자 행정8급 정구미 문책내용

- '99. 2. 10 "훈계" 처분

<훈계처분 사유>

- 충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3조 및 징계업무편람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살펴보면

○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살펴건대

- '96. 2. 12 ~ 2. 13 인감증명사고 발생당시 근무상황부를 보면 담당자 정구미 및 호병계장 안순기는 주민등록사실조사차 관내 출장중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심문조사 및 문답서 등을 살펴보면 출장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근무중인 상태에서 96. 2. 12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토지사기단 일당들이 신청한 원봉로의 허위전입신고서를 대서해 주고 원봉로의 전출지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에서 인감대장 및 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이송되지도 않았음에도 다음날인 96. 2. 13 인감증명 4통을 부정 발급 허위공문서 작성등 위법행위를 한 후 96. 2. 17 전출지로부터 인감 증명대장 및 주민등록 관련서류가 이송되어 오자 신규 인감대장을 소각 처분한 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산보조원 허근영이 토지사기단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공문서 작성등 위법 행위를 단독으로 자행한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됨.

- 담당자 행정 8급 정구미가 99. 2. 12로 징계시효기간 3년이 도래하여 “문책”코자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및 징계업무편람의 의거에 금품수수의 경우는 징계시효기간이 3년이나 인감증명부정발급한 비위행위자는 전산보조원(일용직)허근영이지 담당자 정구미가 아니므로

정구미의 징계시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바, 결과적으로 정구미는 98. 2. 12로 징계시효가 완성된것이 되어 불가피하게 “훈계”처분하게 된 것임 (관련법규해석 참조)

※ 97. 4. 11 징계의결중지(내부결재)당시는 1989년도에 발행된 징계업무편람에는 상급자 감독소홀의 경위 징계시효기간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없었음.

□ 징계관련 법규 <발췌>

<충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 발췌>

○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1)

비위유형 \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과 면	해 임	정 직 - 감 봉	견 책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둔란				
나. 기 타	과 면 -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2)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98 징계업무편람(발췌)>

○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36쪽)

- (1)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  
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 부하직원들에게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독자가 직무태만하  
하거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비위행위공무원의 상급자 감독소홀의 경우 징계시효기간 (57쪽)

- 징계시효기간이 3년인 비위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상급자에게 그 감독소홀  
(성실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2년임.

○ 공금횡령한 직원의 감독책임에 대한 시효 [질의회신(60쪽)]

- (문) 공금횡령을 실무직원 단독으로 하였을시 그 감독자에게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징계할때 '징계시효'는 실무직원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와 동일하게 3년인지 아니면 2년인지?  
(답)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에 공모하거나 기타 연루된 사실은  
없으나 단순히 상급감독자로서의 감독소홀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다른 일반업무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징계시효기간은 2년임.  
(복무 12152 - 229, 95. 6. 13)

## 10. 국가배상심의서류

신청 일	1996. 11/20	신청 번호	357	신청 인	소송사무과
신청 처	소송사무과	신청 인		신청 인	

## 배상금지급신청서 138-6383

서울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고 아래와 같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1996년 11월 20 일

신청인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3-2호 소신 (신청인 표시와 기재함)	성명	(주)중앙호신용임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	전화번호	49-3300
	직업	간접일생	대표자명의	당사자
	도민인	영남대학교 이과대학 법학사 법과정 법학사 임근철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223		
피보상자	성명	(주)중앙호신용임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	기타의 신청사항	기타
	직업	간접일생		
사고개요  상해한 것은 법시외 기재함	발생일시	법시외 기차와 같은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성명	
	사고내용			
신청금액	요양비	원	간접소득	원
	후유장애	원	민감소득	원
	장래소득	원	재산소득	원
	유족소득	원	기타	1,694,925,414원 및 이자
			계 1,694,925,414원 및 이자	
회사근로 관련항목 기타항목	보험금	원	기타	원
신청금액 신청액	보험금	원	기타	원
구비서류 (별첨함)				



원 신청의 구분일부 금리부 구분기인 미수액 양종 추가금 자신의 상회한 경우  
위하여 1996. 1. 20.경 신청인 금리부 대신담당 부장인 신청의 이주창 대신담당장에  
계 신청의 원부토 소유의 수권시 권선구 인계동 994-5 대 969.6㎡, 동소 995-7  
대 274㎡, 동소 1123 대 648.5㎡, 동소 1123-3 대 981.5㎡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니다)에 대한 부채상환기부금, 감정에 필요한 재판서류를 준비하  
고 추가금 금 2,000,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 금리부는 위 구  
분일부의 가압류 해제와 감정기관에 금리부권감정을 의뢰하여, 1996. 1. 29.자  
감정서를 받아, 그 감정가액인 금 2,320,000,000원의 대한 추가비용 65%에 상당  
하는 금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하고, 그 상환방법으로는 대출기간 3년,  
대출원금은 당기에 일시상환하는 "계좌이체금 대출"으로 금 800,000,000원을, 대  
원 신용부채 부담금과 이자비용 같이 부담하는 "부담금부채"으로 금 700,000,000  
원을 각 대출하기로 합의하고, 1996. 1. 30. 차입신청서외서류를 작성, 신청인 금리  
부 신청의 대신부의 절차를 취하였습니니다.

금리부 신청인 금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금액등의 비추어 신청인  
금리부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지 답사하고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파악, 대  
출승인 절차를 취하고, 신청의 구분일부는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금리  
부 제공자 겸 면담부중인인 신청의 원부토(나중에 압류된 채권불상이의 원부토  
라고 지적한 것인 이하 "항정 원부토"라 함니다)와 함께 신청인 금리부에서 담당  
자인 신청의 이주창 대신담당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 금리부 제공자 겸 면담부중  
인 확인절차를 밟았고, 금전주의의탁약정서, 신용부채 부담금계산서, 부채당면액  
계산서, 금리부로서 제공대출서류의 작성내용의 실명을 받고, 위 서류에 각각  
필서명하고 인감증명서 2통 금리부 (이 신청의 항정 원부토가 "통기권리양용부  
실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관용하는) 신청의 항정 원부토가 작성한 확인서인용  
각 절차를 밟으며 이에 신청인 금리부 금리부 제공자 겸 면담부중인 원부토  
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니다.

이리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부채상의 당좌로 1996. 2. 14.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 11256호본회 채권집회로써 2,250,000,000원으로, 신청인을 단차당권자로 하여 단차당권집행하기 전의 경우와 같은 통기수 접수 제 11257호, 신청인을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집행기를 집행하였습니단.

그리고 1996. 2. 15일 신청인 박근희의 신청의 이주창 요신파장은 판례제하 각인 신청의 원부본의 부인부채해산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승주시 양성관 사무관의 부산(진환)으로 최종 판정 확인하였습니단.

신청인 박근희의 경우 본 이 사건 부채상의 당좌 총 당좌금 1,500,000,000원 ("계좌금보통 계좌" 금 800,000,000원 및 "부금 박근희" 금 700,000,000원)를 기피처리하여, 위 당좌금의 신용부과 1회 해입금 36,900,000원 및 부금 박근희 선담이자 1회금 금 9,625,000원 등 합계 금 46,525,000원을 공제한, 당좌계좌 수입잔액 금 250,100원, 판보강정금 금 1,888,000원, 해부세, 주택채권 구입의 등 처당권 집행비용 17,903,390원 합계 금 20,041,490원을 당좌(잔액2회중의 1, 2 각 당좌금잔액)하고, 금 1,433,433,510원수 부채상의 보행금과 부채본 인금(잔액3회 중 1, 2 각 보행금과 인금에 상환)하고,

그리고 같은날 구채입은 금 1,250,150,000원에 대한 자기앞수표 5백(잔액6회중 수표로써 환산)을 신청인 박근희에게 최종 인출하고 구채입의 보행금과 부채에 금 183,283,510원이 남아 있었으나, 위 1995. 4. 21.자 부금 박근희 당좌금 150,000,000원에 대한 부금 및 이자등 합계 금 17,595,000원 및 합인어음금 59,600,000원을 관기전 종무상환하기 위해 위 구채입서 최종 인출하였습니단.

그리고 신청인 박근희의 합인어음의 지급일전 상환에 따라 미경리한 이자 금 535,834원을, 그리고 1996. 2. 21.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보행금과 지급이자본 금







원)로부터 이자 대출원리금에 후부의 보수할 수 있었는지 알 것입니다(의 부채산액  
가액은 약 2,320,000,000원이고, 단기양질의 채권포지액은 약 2,250,000,000원임).

이전 신청일 현재 신청인 부채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약 1,694,825,414원이고, 대출이  
자 및 연체분의 상환기간과 단기부 같으며, 위 두액일의 신청인 부채에 대한 산출비  
율 C 리오트 법무회의 부채 단기부대출의 경우 대출이율은 16.5%, 계약미결제 대출  
의 경우 대출이율은 17.5% 입니다.

가. 부채 단기부 대출 약 700,000,000원의 경우, 만기는 1999.2.15., 대출이율은 연  
16.5% (간제17호중의 1 조산리법변경안 참조)이고, 연체분은 매월 발생이자에  
대하여 연 20%를 적용하며, 이자 및 원리의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에 연평균  
매월 납부할 부채(신용부채 + 담부이익<이자>)을 만기일까지 불입함으로써 대출  
총액을 상환합니다. 월 담부이익(이자)의 계산은 담부금액 X 16.5% X 1/12  
(간제16호중 신업사원 확정 보유인수 내역 40쪽 참조)이고, 연체분의 계산은 월  
담부이익 X 20% X 연체일/365 입니다.

이에 따라 ㉠ 원금 700,000,000원, ㉡ 대출이자 금 77,000,000원 ㉢ 연체분 금  
5,817,188원 등 합계(㉠+㉡+㉢) 금 782,817,188원에 이릅니다(계산근거 별지2 참조)

나. 계약미결제 대출 금 800,000,000원의 경우, 만기는 1999.2.15., 대출이율은 연  
17.5%(간제17호중의 1 조산리법변경안 참조)이고, 연체분은 매월 발생이자에 대  
하여 연 20%를 적용하며, 이자는 매월 납입기일(계약일)에 후회하고, 원금은 만  
기일에 일시상환합니다. 대상기간(이자 발생기간)의 일수계산은 최초불입시점  
대출 원금입부부터 최초 납부기일 전일까지의 일수일, 계속불입시점 전회 납부  
기일부터 상회 납부기일전 전일까지의 일수를 산정합니다. 이자계산은 대출금

## 사 실 조 회 회 보

번호: 96국 354호

신청인: (주) 동아상호신용금고

위 사건에 관하여, 1997. 3. 11. 사실조회(가항 - 마항)를 요청받고,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 다 음

#### 1. '가'항에 관하여

##### (1) 사고발생 경위

가. 신청의 허근영은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93의 4 소재 양성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 계중명 발급의 민원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1996. 2. 12. 10 : 00 경 위 면사무소에서 자칭 '원봉로'라는 자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현덕면 도대리 6의 3 번지에서 충주시 양성면 농암리 343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고,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임을 확인하고(별첨1. 주민등록증), 격변하게 전입신고를 수리 하였습니다(별첨2. 전입신고서).

나. 위와 같이 전입신고 업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칭 원봉로는 '사업상 급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빨리좀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청의 허근영은 주민등록 관계 서류가 제출지모 부터 전입지로 도착하기전에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한 님이 "부족하였던 신청의 김중수와 함께 돌아갔는데" 신청의 허근영은 바쁜 업무관계로(당일은 필요일이었고, 오전장이 있으므로 민권업무가 부족하였음) 그들이 면사무소를 빠져나간후 귀넷게 책상 안쪽 구석에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놓고간 것을 알고 후에 들춰줄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다음날인 1996. 2. 13. 오전 또다시 자칭 원봉토가 전남 동행했던 김중수와 함께, 면사무소 민권 업무 창구에 와서 담당자인 허근영에게 자기는 인감신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니 신규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급히 발급 받아야겠다고 요청하여 신청의 허근영은 동인이 전남 격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고 인턴허에 동일한 노인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업상 급히 필요하다니까 그의 요청에 따라 신규 인감신고를 접수하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하고, 인쇄용을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기재하였던 것입니다(별첨3. 인감증명 발급대장).

라. 그후 신청의 허근영은 그달말경인 1996. 2. 말경 원봉토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 서류가 양성면사무소에 도착한 것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봉토에 대한 기존의 인감대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가 신규로 작성한 동인에 대한 인감대장을 폐기 하였던 것이고, 상급자나 면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후 1996. 4. 13. 진짜 원봉토 본인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관제로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퇴거된 것을 알고, 양성면사무소

밝혀진 것입니다.

바. 이 사건 관련 판결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칭 원부토락산 상명 불상자 및 그와 동행하였던 김중수 등은 신청의 구분인, 최영근, 은경심등 함께 토지사기단의 일원으로 공모하여 자칭 원부토락산 전과 원부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제작하여 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위와 같이 발급받아 다른 대출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1995. 2. 15.경 신청인 (주)동아상호신용금고로부터 전과 원부토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았던 것입니다(별첨8. 판결).

사. 충주시는 1996. 4. 13. 토지사기단에 속아서 인감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경위를 파악한후 이듬해인 1996. 4. 15. 자칭 원봉로라는 생명 분상자와 그와 동행했던 신청의 김종수를 충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별첨4. 관련자고발), 같은날 원봉로 본인 부동산 소재 관할 법원등기소에 사고예방 공문을 발송하고(별첨5. 위장 인감 증명발급 상광통보), 같은달 17. 금융기관 6개 중앙회에 위장 인감 증명 발급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고(별첨6. 위장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협조요청), 같은달 22. 양성면장 명의로 신청인인 (주)동아상 호신용금고에게 위장 발급된 인감증명의 무효임을 통보한바 있습니다(별첨7. 위조 인감증명 발견 통보).

(2) 충주시의 책임 여부

가. 앞서 본바와 같이 신청의 허근영이 충주시 양성면사무소의 제증명 발급 업무의 보조자로서 업무처리중 원봉로임을 자칭한 자로부터 그가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진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전산처리한 결과 전출지에도 동일인 명의가 있음을 알고 전입신고들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나.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 인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그의 면전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후 인감란에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담당자인 허근영은 위 조항에 의거해서 자칭 원봉로라는 자로부터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였

한 바 2.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수 있는 경우'가 열거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전입신고 불 한 직주 건물지에서 편면 서류가 도착하기전에는 인감 신고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위 허근영은 신규로 인감신고 불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서 기재 내용에 보면, 신청인도 담당자(이주창)를 통하여 이 사건 대물과정에 있어서(1996. 1. 20. 경부터 ~ 2. 15. 경 까지) 제한서류를 준비하면서,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봉로를 자칭한 성명 불상자로 부터 동인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아 동일인으로 오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 불상자로 부터 자필 담보제공서류를 작성 교부 받았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용하여 '토지사기단'의 교묘한 수법에 의하여, 면사무소 직원인 신청의 허근영이나 신청인 회사의 담당자나 농협담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 신청외 허근영은 토지사기단과는 아무런 공모를 한 일도 없으며, 단지 속칭 '금행료' 명목으로 토지사기단이 놓고간 100만원권 수표 한장을 돌려주지 못한점 때문에 토지사기단과 함께 이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던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볼때, 충주시는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충주시에 배상의무가 있다해도 신청인 자신이 이사건 담보대출 과정에서 근한달간이나 대출받아간 사람이나, 자칭 원봉로를 대면해오면서 자칭 원봉로가 대출받기 3일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고, 또한 이틀전에 인감증명서를 받아온점등,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상 대출시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본인으로 부터 담보제공의사를 분명히 확인함),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함부로 거액의 대출을 한 과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나'항에 관하여

- (1) 담당자 허근영은 1996. 6. 17. 본인의 원에 의한 사직서의 수리로 인하여 사직 되었음(별첨5. 사직원).
- (2) 위 허근영은 뇌물수수등 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음(별첨4. 판결).

3. '다'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 없음

4. '라'항에 관하여

신청이 재소한 사실 없음

5. '마'항에 관하여

(1) 주소변경 신고

과거에는 주소변경시, 전출지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난후 14일내에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으나, 행정편의 및 간소화 체신에 따라 전입지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점이 이사건에서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감증명법

가.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증명청은 - - -'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인감증명법 제8조는 1996. 12.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되기전의 인감증명법 제8조는 '인감을 신고한자가 그 성명, 주소 또는 본적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사유를 증명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신청인은 신청이유 제2의 다항(신청서 5페이지 중단)에서 '새로운 전입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전출지로 부터 주민등록과 기존의 인감대장이 이송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감증명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의 2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위법시행령 제10조는 인감신고를 거부할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입신고와 뺨을 같이하여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전출지로 부터 주민등록과 인감대장이 송부되어 올때까지는 인감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3)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사건은 어디까지나 토지사기단이 담보 부동산의 목적물을 특정한 다음, 소유자인 진짜 원봉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다음, 동인과 연령, 인상등이 비슷한 성명 불상자를 진짜 원봉로의 행세를 하도록 하고, 동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하여 면사무소 창구나 담보대출금고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을 당하게 한때에 그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양상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볼때,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주민등록증 제도는 좀더 과학화, 정밀화 되어 위조의 여지가 없도록 되어야 할것입니다.

(4) 충주시 의견

가. 신청의 허근영이 뇌물을 수수하였던 점은 별론으로 하고, 동인이 전입신고와 인감신고를 수리하고나서, 인감증명서 4부를 발급해준

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 더구나 신청인은 지역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자사기단과 협의하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가짜 원봉토를 진짜 원봉토로 오인한 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닐수 없으며, 더구나 신청서 기재대로 1996.

1. 20. 경 부터 1996. 2. 15. 대출일자 사이의 상당기간동안 한번도 원봉토의 주소지에 찾아가 본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은 담보제공을 받고 지역을 대출하는 금융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96노 2443호 사건의 기록입제에 대한 제조사와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사건 대출관련 서류 및 대출과정에 대한 경위에 관한 엄밀한 조사에 의하면, 신청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 신청의 허근영과 신청인의 이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별첨1. 주민등록증	1 봉
2. 전입신고서	1 봉
3. 인감증명 발급대장	1 봉
4. 판례자 고발	1 봉
5. 위장 인감증명 발급 상황 정보	1 봉
6. 위장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협조 요청	1 봉
7. 위조 인감증명 발견 정보	1 봉
8. 판결	1 봉
9. 사죄원	1 봉

(위는 각 사본임)

1997. 3. 17.

총 주 시

시장 이 서 종

위 대리인 변호사 박 송 근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1997. 4.

- 양성인감사고에 따른 국배심신청사건관련 -

# 사실조사회보에 대한 추가의견

'97. 3. 27. 사장님 기시사항 임니다.

담당자	재 장	담당관	실 장	부사장	시 장	결재일자
	이	김	김	김	김	4/3

박충근 변호사와 협의 후 서울지점에 제출코자 함니다.

중 주 시

## 사실조사회보에 대한 추가의견

사 건 : 96국 제354 손해배상신청

신 청 인 : (주)동아상호신용금고

피신청인 : 충 주 시 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고의 금융사고의 과실책임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 대출규정준수의무의반

1. 신청인은 신청외 구본일에게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면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인 금고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외 구본일은 미래기획을 운영하면서 이사건 발생이전인 1995. 4. 10자 신청인 금고에 대출신청하여 1995. 4. 21자 구본일의 장인 김영재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금 급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신청인 금고와 금융관계를 행하여 온 자라 합니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그 인가신청서에 업무방법등을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제5호에 급부금, 대출금, 어음할인액등의 지급방법, 제6호에 채권보전방법등을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회원금고의 업무지도를 위해 발간한 상호신용금고 실무교본Ⅱ(여신) 내용을 보면 위 관계법규를 근거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금고는 위 대출 당시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과정에서 신청의 구분일의 업체 미래계획은 자기자본이 없어 외관상 담보물 이외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 금고는 구분일에게 추가대출시 자신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위 업무방법서에 의거 대출업무처리에 보다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대출에서 얻은 수익을 기초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출취급시에는 반드시 대출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조심성있게 실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 금고는 자신의 영업상 수익성만을 추구하고자 대출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신청의 구분일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등에 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소홀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금부등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하로, 15억원(가계자금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금고는 신청의 구분일이 1995. 4. 21.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대출한도액이 13억5천만원임에도 15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한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 신청인 금고는 자신의 대출행위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규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대출규정 제3조의 대출의 원칙으로서 “대출은 ……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고, 제5조에는 대출의 범위로서 “대출금은 채무자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자금수급계획등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6조에서 “제3자의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대입보”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27조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신청의 구본일에게 1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신청인 자신의 업무규정대로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청인 금고가 대출업무중 가장 기본사항을 소홀히 취급함에 따라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신청인 금고는 대출절차규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대출신청에 있어 그 신청서류로서 대출규정 제95조에서
  - ① 대출신청서
  - ② 대출약정서
  - ③ 담보약정서 또는 보증서
  - ④ 채무관계자의 인감증명서
  -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 ⑥ 납세완납증사본
  - ⑦ 법인등기부등본등을 징구하도록 하고 있고,

- 대출신청의 확인을 위하여 제96조에는
  - ① 신청인의 본인여부 및 위임의 적부
  - ② 채무관계자의 법률상 행위능력 유무
  - ③ 자금용도의 적부
  - ④ 상환자원의 적부
  - ⑤ 담보물건의 적합성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
  - ⑥ 제3자의 담보제공자 사유
  - ⑦ 사업개요 및 전망
  - ⑧ 경영자 인적사항
  - ⑨ 과거의 거래상황등을 조사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사건의 결과를 놓고 판단하건데 신청인 금고는 채무자 구분일에 대한 위 조사 확인사항중 어느 한가지 항목이라도 철저히 처리한 흔적이 없을 뿐만아니라
  
- 담보제공자인 원봉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실지조사를 함에있어 본인 여부 및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인 금고는 대출승인규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대출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대출규정 제99조에 의거 대출승인 신청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고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 그 첨부서류로써 제100조에는
  - ① 채무관계자의 신용조사서와 거래실적표
  - ② 사업계획 및 실적
  - ③ 재무제표
  - ④ 기업체 평가표
  - ⑤ 담보물건조사서
  - ⑥ 기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위 신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본일의 사업체인 미래기획의 사업계획상 적정성 여부, 상환능력 유무여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물건조사에 있어서도 제3자 담보제공에 대하여 담보제공의사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5. 신청인 금고는 대출을 실행하기전 사전조사 이행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 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조사항목으로써 제105조에는

- ① 본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이 틀림없는가?
- ②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격 및 권한의 유무
- ③ 채권보전서류의 서명과 인감은 채무관계자가 직접 집행한 것이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부합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 대출약정체결시 제106조에는 위 제105조에 의거 조사결과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최초 대출신청시 철저히 해야 할 신용조사 및 대출 절차시 실지조사 및 담보제공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최종대출 실행단계에서도 대출사전조사를 소홀히 처리하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신청인 금고는 대출금 교부단계 직전에 위 내용을 한번이라도 더 검토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대출행위의 편법 및 부당성

1. “신청의 구분일은 …… 1996. 1. 20경 …… 신청의 원봉로 소유의 …… 4필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 감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로 금20억원의 대출을 요청……”에 대하여
  - 대출규정 제95조제1항의 대출신청서류를 보면 보증서 제3호에 담보약정서를 제4호에 채무관계자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 물건 담보제공시 담보제공 승락서를 담보제공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청인 금고는 대출신청시 원봉로의 담보제공 또는 설정용 인감이나 담보승락서를 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형금융사고의 발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 ※ 피신청인은 이당시 원봉로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2. “1996. 1. 29자 감정서를 받아 …… 각대출하기로 합의하고, 1996. 1. 30 차입신청품의서를 작성, 신청인 금고 소정의 여신품의 절차를 취하였습니다”에 대하여
  - 차입품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최초대출 상담시 징구한 서류(대출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제3자담보제공승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 기본서류)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조사서, 여신심사결과서, 사업계획 및 실적, 재무제표, 기업체평가표, 담보물건조사서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 통상 위 서류에 의거 여신품의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위 구비서류중 원봉로의 인감증명을 징구치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등 신청외 구분일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편법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등 대출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신청인 금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금액등에 비추어 신청인 금고 직원이 이사건 부동산을 현지 답사하고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파악 대출승인 절차를 득하고"에 대하여

- 신청인 금고는 신청의 구분일의 대출신청의 중요도를 인지한 것처럼 현지 답사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그 행위자체를 검토해보면 형식을 갖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할 뿐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물건 담보제공에 대한 현지 답사할 경우 의당 본인을 면담하여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구분일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성과 상환가능성 여부를 미리 검토 분석하여 대출승인 절차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신청인 금고는 구분일에 대한 편법대출 행위를 이미 진행해 왔기에 대출규정을 무시하고 확인 및 사실조사에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합니다.

4. "신청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 2. 14 …… 신청인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경로 …… 그리고 1996. 2. 15경 …… 담보 제공자인 신청의 원봉로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충주시 양성면사무소에 유선(전화)로 직접 조회하였습니다"에 대하여

- 원봉로에 대한 피신청인의 1996. 2. 13자 인감증명 발급행위는 적법한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 위조 주민등록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착오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그런데, 신청인은 이미 신청의 구분일에게 대출승인절차를 모두 경로해 놓고서 자신의 업무처리 과오를 망각한 채 피신청인이 발급해 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로한 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1996. 2. 15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즉, 인감발급행위의 진위 확인은 설정등기신청 이전에 행하여야 했습니다.
- 신청인 금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행위에는 위 각항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발급행위의 정당성

- 1997. 3. 17자 사실조사 회보내용중 제1항의 내용을 원용합니다.

## 결 론

- 피신청인이 밝힌 바 있는 위 내용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작성된 대출규정 및 실무교본Ⅱ(여신)에 수록된 내용에 터잡<sup>한</sup> 신청인 금고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신청인 금고가 신청의 구본일의 대출신청, 대출상담 및 관계서류정구, 신용도 조사, 여신심사, 대출승인을 위한 차입품의서 작성, 여신품의 절차개시등 대출을 위한 일련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 금고를 규율하고 있는 대출규정의 제규정을 준수하였더라면 이와같은 대형금융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 금고의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여 무책임하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인 금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 역설적으로 신청인 금고가 대출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이와같은 대형금융사고는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대출업무처리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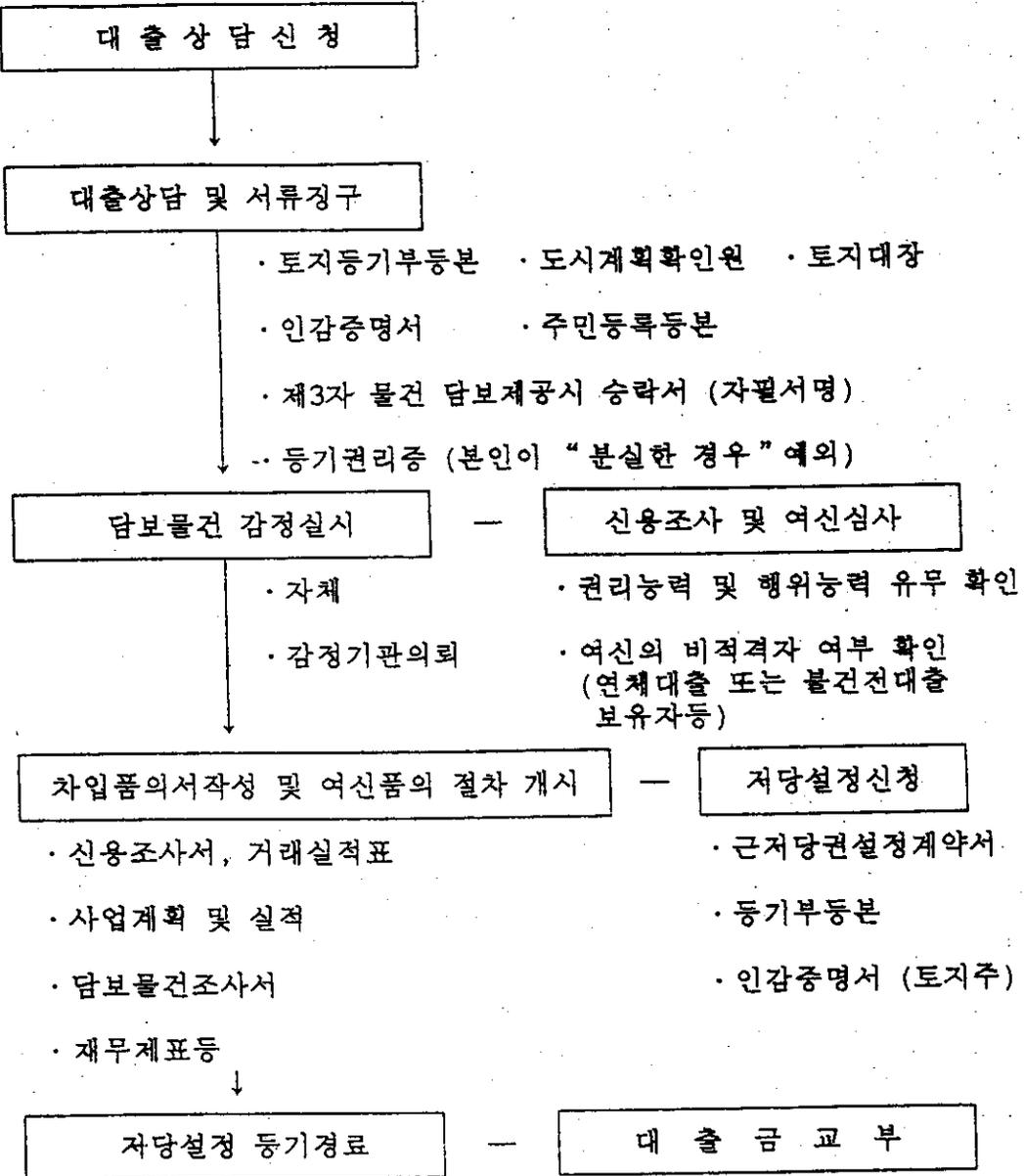
1997. 4.

피신청인 총 주 시 장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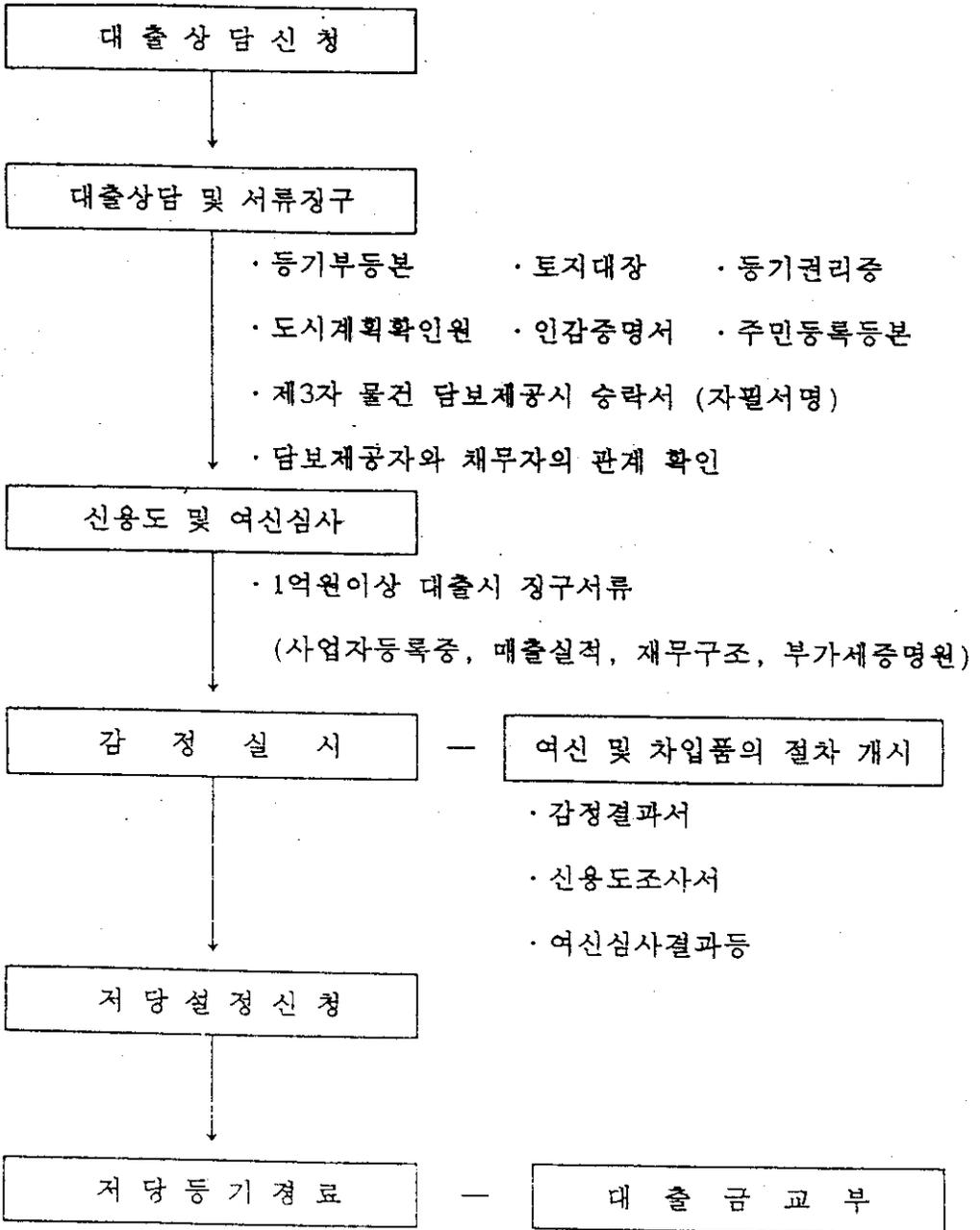
# 대출업무처리의 형태

## □ 기본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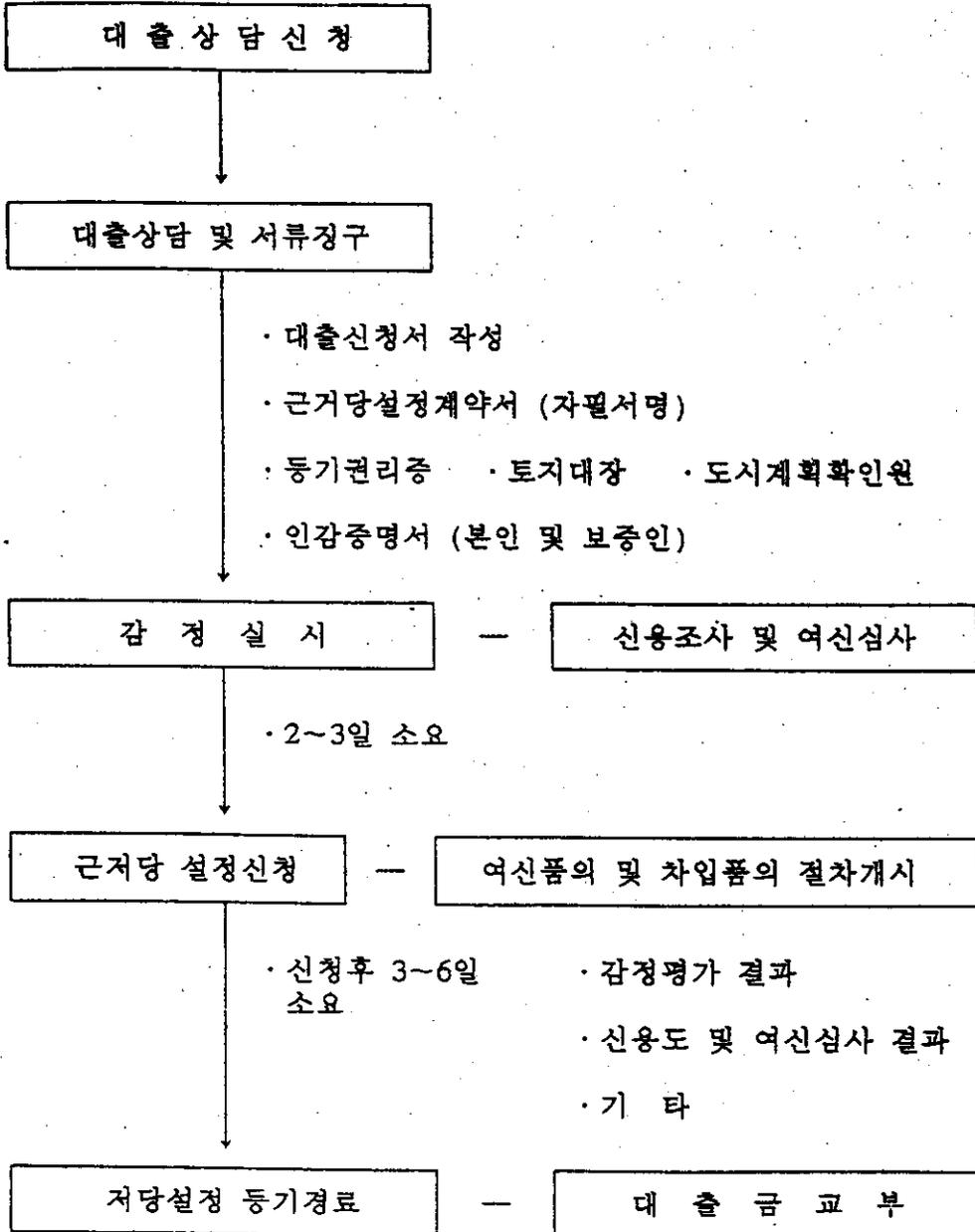


□ 금융기관별 형태

< 충북상호신용 금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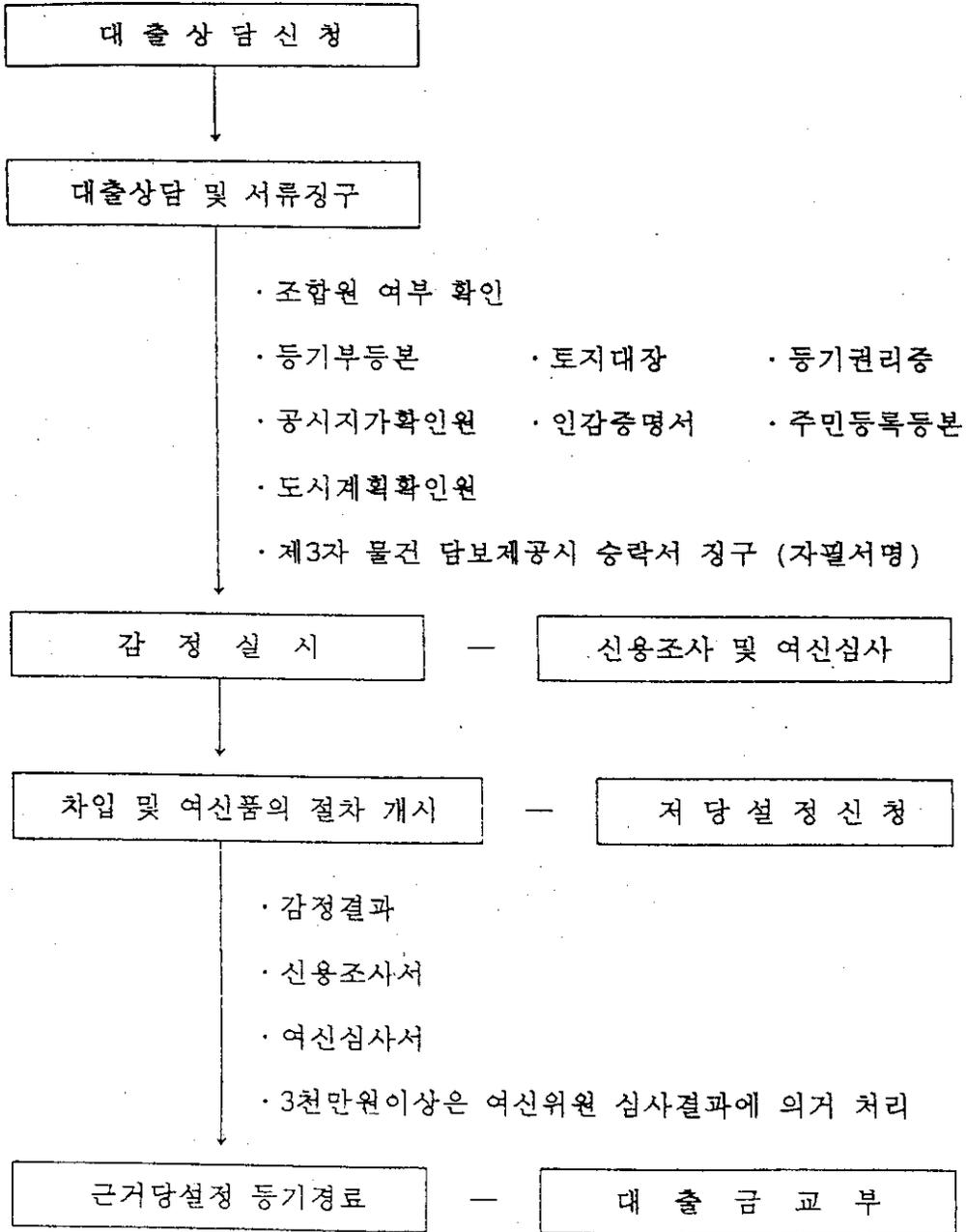


<충북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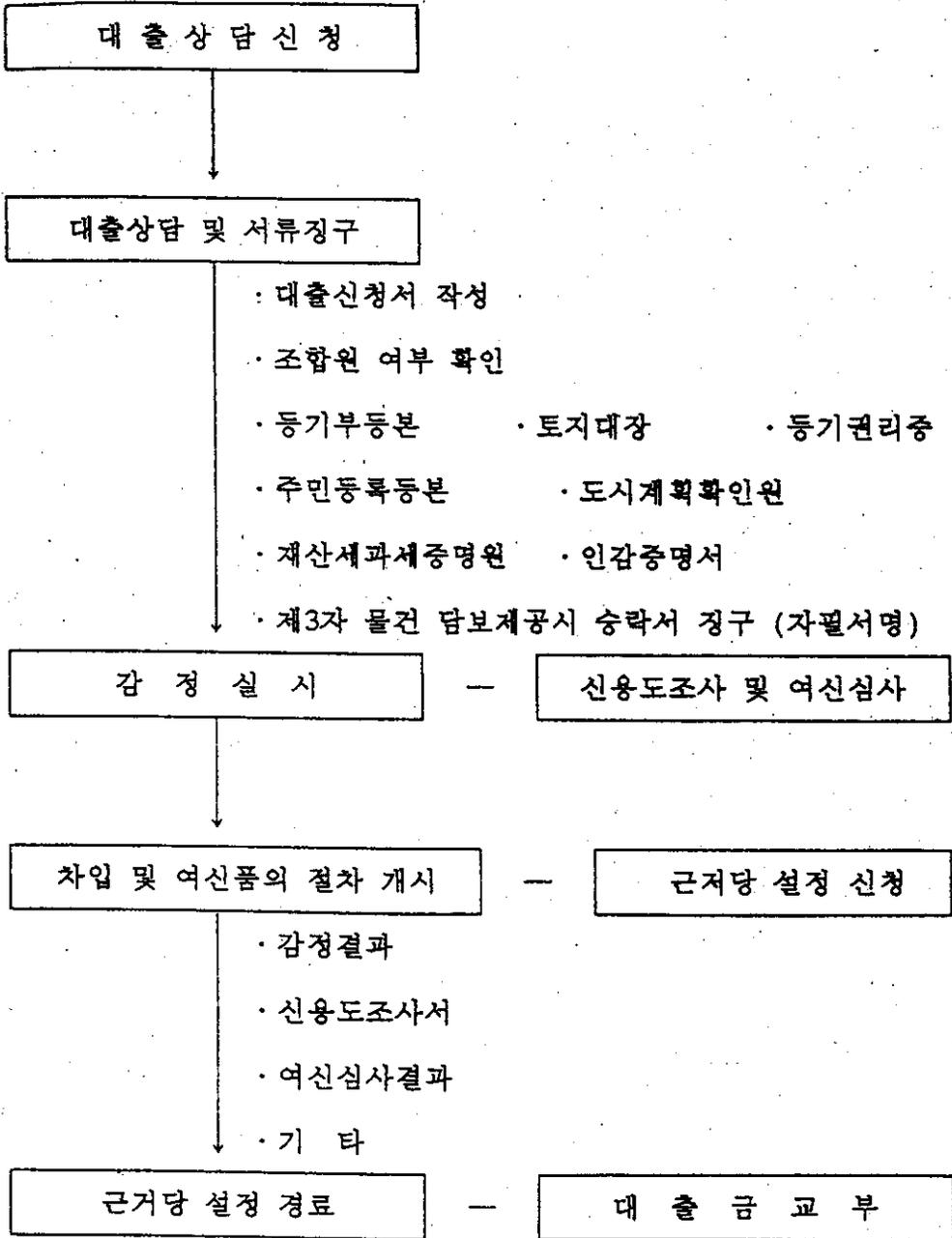


· 등기경료 즉시 또는 그 다음날 제출

< 야현신용협동조합 >



<성내새마을금고>



1997. 7.

96국 제354호

- 손해배상신청사건에 대한 -

# 의견서

담당자	계장	담당관	실장	부시장	시장	결재일자
	이재	김영	김영	이영	이영	7/7

박종관 변호사 및 서울지정에 제출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정에 등부행  
(수신: 박종관 변호사)

## 중 주 시

# 의 견 서

사 건 : 96구 제354호 손해배상신청

신 청 인 : (주)동아상호신용금고

피신청인 : 총 주 시 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합니다.

## 1. 인감증명제도에 관한 국배심심의회의 이해 및 인식제고

-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961. 9. 23 인감증명법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되어 왔음.
- 인감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지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호적부·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거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소관증명청에 출두하여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구술로 신고해야 하며,
- 이때 증명청은 그 신고인이 본인인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면전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인감변경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같음하며, 주소변경에 따른 전입신고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민원서류, 기타서류를 접수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감증명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용도가 부동산 임대용일 경우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날인, 서명 두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증명청이 증명의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신청서에 찍힌 인영이 영토하지 아니할 때,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등의 사유의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명 제15조)
- 그리고, 신고된 인감을 개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명청에 인감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인신고를 해야 함.

## 2. 피신청인의 인감발급행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 '96. 2. 12 참칭 원봉로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와 당시 허근영은 주민등록증에 의거 원봉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인감대장이 전출지로부터 우송되어 와야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 원봉로는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재차 제시하면서 본인일과 본인의 인감도장임을 강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재촉하였음.
- 이에 허근영은 원봉로에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약속하고 전출지인(현덕면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원봉로의 거주 및 인감신고사항을 문의하였던 바, 거주사실 및 인감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원봉로는 '96. 2. 13 인감증명을 오전중으로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된다 하면서 인감증명발급을 강요하였고.
- 담당공무원인 허근영은 인감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이 있기 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였으나

- 원봉로가 간곡하게 또는 거칠게 항의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관청에서 업무처리 형편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 허근영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단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여부와 전거주지에 거주한 사실 및 인감신고사실이 전날 현덕면사무소 담당자와 전화통화로써 확인되었기에 직권으로 개인신고에 의한 신규인감을 발급해 주게 되었음.

### 3. 인감증명발급행위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 ① 인감발급신청자의 본인여부확인

-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하는 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에 의거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어
- 인감발급 담당공무원(허근영)은 위 법령에 의거 참칭 원봉로가 제거한 주민등록증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하였음.

#### ② 전주소지에 대한 사실확인 실시

- 참칭 원봉로가 시급하게 인감발급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허근영은 전주소지에 거주사실 및 인감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FAX뿐 이어서 전화로 현덕면사무소 민원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

#### ③ 인감개인신고에 의한 신규인감발급의 적법성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5조의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의하면 참칭 원봉로에 대하여는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 민원편의제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원봉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허근영은 인감증명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감개인신고에 의한 신규인감을 발급해 주었음.
- 그러므로, 허근영은 원봉로 및 트지사기단과의 공모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적당치 아니한 것임.

4. 수사방향 설정시 사실오인

- 위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때 사건수사 기초단계에서 피신청인의 과실 (인감발급결과)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 증명청(담당자 허근영)에게 매우 부당한 형질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상실 및 수사재량권 행사시 사실을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5. 결 론

- 인감증명법령의 취지를 살리고 권원인에 대한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증명청의 도리를 다하고자한 허근영의 행위는 현행법령의 준수는 물론 업무처리요령등 어느것도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적법타당한 행위인 것이며,
- 오히려 증명청(담당공무원 허근영)이 한 행위는 관계법령의 국민입법 정서상에 부합되는 민의를 위한 행정처분인 것임.
- 따라서, 원봉르에 대한 인감증명발급행위는 증명청인 충주시청의 위법·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1997. 7.,

충 주 시 장 이 시



서울지구배상심의회 귀중

# 서울고등검찰청

(T. 530-4533 FAX. 3476-0705)

분류기호: 배심61220- *465*

1998.

6.

*5*

수 신 : 충주시장

참 조 : 법무담당관

제 목 : 배상결정통보

사 건 번 호	서울지구배심 96 년 국 제 354 호		
신 청 인	(주)동아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동열	대 리 인	변호사 이재후

위 배상금 지급신청 사건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 등본과 같이 기각결정하였음을 통  
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배상결정서 등본 1통. 끝.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장





사전기판 비율	요양비	199년	인	원지판
	장례비	199년	인	원지판
배상 요 인 용 내 요	배상내역	신청액	액	비고
	1. 요양비			
	2. 후업 배상			
	3. 장례 배상			
	4. 유족 배상			
	5. 장례비			
	6. 재산 손해	1,694,925,414	기각	
	7. 위자료			
	8. 기타			
계	1,694,925,414			
상속비 지 비 요	신청인성명	비율	상속비 지급내역	지비요
			유족 배상 원장료	

1998. 5. 28.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한부환



위원 이병기

*Handwritten signature*

위원 윤익현



위원 이영주



## 조사결과

### 1. 배상책임 성립 여부

#### 가. 조사자료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충주시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및 첨부자료(서울지방법원 등부지원 97가합 5747호 판결문 사본 등) 등을 종합함.

#### 나. 인정사실

- (1) 신청의 구분일은 타에 수실역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전에 직장에서 알게 된 신청의 최영균을 통하여 허위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남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는 이른바 토지사기단의 일당인 신청의 성명불상자(이하 참칭 원봉로라 함) 등을 소개받고,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허위의 인감증명 등 부동산담보대출권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함.
- (2) 위 참칭 원봉로는 1996. 2. 12. 충주시 산하 양성면사무소에 가서, 위 양성면사무소의 인감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인 신청외 정구미를 보조하던 신청외 허근영에게 마치 자기가 진짜 원봉로인 것처럼 행세하면

서, 위조한 원봉르의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원봉르가 평택시 현덕면 드내리 6의 3에서 거주하다가 위 양성사서무소의 관내인 충주시 양성면 능담리 343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위 허근영에게 위 원봉르의 전 주민등록지에는 위 원봉르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 새로 전입하는 양성면사무소에서 위 원봉르의 신규 인감신고를 수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금 1,000,000원을 교부함.

(3) 위 참칭 원봉르는 같은달 13. 위 양성사무소에서 위조된 원봉르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제출하면서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자, 위 허근영은 이에 근거하여 위 원봉르의 신규인감 대장을 만든 후 허위의 원봉르의 인감증명 4통을 발급해 줌(위 허근영은 참칭 원봉르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250203-10016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짜 원봉르의 주민등록번호는 250203-1001319라는 사실을 간과함).

(4) 한편, 위 구분일은 1996. 1. 20. 그 전부터 금융거래가 있어 왔던 신청인에게 15억원의 대출신고를 하고, 위 참칭 원봉르는 1996. 2. 14.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위 허위의 인감증명서 4통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원봉르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94의 5 대 969.6㎡, 같은동 995의 7 대 274㎡, 같은동 1123의 3 대 981.8㎡의 부동산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

- (5) 신청인은 1996. 2. 14. 위 참칭 원봉로부터 달보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접수 11256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원, 채무자 구본일, 근저당권자 신청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및 같은날 같은 법원 접수 제11257호로 신청인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경료함.
- (6) 신청인은 같은달 15. 위 구본일에게 대출기한을 3년,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계약금액내대출” 금 800,000,000원, 매일 신용부금과 이자를 같이 불입하여 상환하는 “부금급부금대출”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0원을 대출함.

#### 다. 관련 법규

##### (1)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 (가) 개정 경과

이건과 관련된 인감증명법의 규정은 1991. 1. 14. 개정(법률 제 4315호, 1991. 3. 1. 시행)되고, 시행령은 1991. 4. 16. 개정(대통령령 제13351호, 1991. 7. 1. 시행) 및 1993. 12. 28. 개정(대통령령 제14032호, 1994. 1. 1. 시행)되었는 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나) 개정 요지

- ① 종전에는 개인별주민등록표에 통합 관리하던 인감대장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분리하여 관리함.
- ② 증명청은 인감의 신고 또는 인감증명신청 등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인감의 증명을 함.

- ③ 인감증명의 용도는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만 매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나머지 용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 ④ 인감신고자가 인감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따라 인감대장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본인이 제출한 사진을 붙임.

## (2) 법령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의 효력과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범위

### (가) 인감증명의 효력

인감증명법의 목적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고, 인감신고 또는 인감증명신청 등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인감신고 수리 또는 인감증명의 요건이 아니며, 부동산매도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의 용도 및 수령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므로, 인감증명의 효력은 신고된 인감과 증명을 원하는 인감의 동일성 증명에 그칠 뿐, 인감의 증명을 신청한 자나 인감증명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자가 본인이나 유효한 대리인인지 여부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나)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범위

인감대장과 개인별주민등록표가 분리 관리되고 있고, 실제 사무분담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사무와 인감증명사무가 분리되어 있으

며, 인감신고 또는 인감증명신청 등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므로, 담당 공무원은 인감의 증명을 신청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면 족하고(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7조 제2항),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사진을 대조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라. 배상책임의 유무

### (1) 위 허근영의 과실 여부

(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 인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그의 면전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란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허근영은 위 조항에 의거해서 참칭 원봉토로부터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였던 것이고(이는 전날 전입신고 때나, 다음날 신규 인감때에도 확인한 바 있음),

(나)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인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전입신고를 한 직후 전출지에서 관련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는 인감신고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위 허근영은 신규로 인감신고를 수리함.

(다) 그러므로 위 허근영은 위 원봉로의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임.

(2) 가사, 위 허근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증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위 허근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3) 신청인의 증대한 과실 및 신의칙 위반

(가) 신청의 구분일은 미래기획을 운영하면서 1995. 4. 10. 신청인에게 대출신청하여, 같은달 21. 구분일의 장인 신청의 김영재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1억5천만원을 부금 급부금으로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신청인과 금융거래를 해 오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위 대출당시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과정에서 위 구분일의 미래기획은 자기자본이 없이 위 담보들 이외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

(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급부 등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여움의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규모 기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의 5로 하되, 15억원(가계자금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1995. 4. 21. 구분일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출하여 주

어, 대출한도액이 13억 5천만원임에도 15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상호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였음.

- (다) 신청인은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 위 및 역량이 있고, 내부규정상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담보에 관한 조사는 현지에서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에도, 위 구본일에게 1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함에 있어 위 원봉로의 주소지에 찾아가 담보제공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
- (라) 위 참칭 원봉로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경위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음.
- (마) 신청인은 대출신청시 내부규정상 필요한 담보제공자인 위 원봉로의 담보제공 또는 설정용 인감이나 담보승낙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차입품의서 작성시에도 위 원봉로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위 구본일에 대하여 대출승인을 하여 이 사건 대형금융사고의 발미를 제공함.
- (바) 결국, 이 사건은 신청인이 위 구본일의 대출신청, 대출상담 및 관계서류징구, 신용조사, 여신실사, 대출승인을 위한 차입품의서 작성, 여신품의 절차개시 등 대출을 위한 일련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이 규율하고 있는 대출규정의 제규정을 준수하였다라던 이와같은 대형금융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주

장하는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인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신의 영업상의 수익성만을 추구하고자 대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담보제공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이렇듯 신청인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있음에도 위 허근영이 위와 같이 인감증명 발급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소 정확히 살피지 못한 점을 주장하면서 그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 2. 결론

따라서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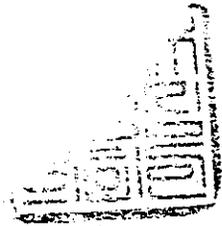
## 참고판례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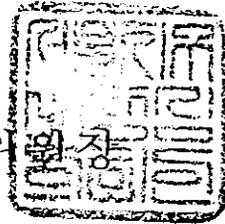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등본입니다.

1998 . 6. 9.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간사 검사 강동



# 양성인감사고관련서류

# 목 록

일련번호	내 용	페이지	비 고
계	5 건		
1	· '96년도 양성면 사무분장 내역		
2	· '96년도 양성면 민원계 사무분장내역		
3	· 일용직(허근영)채용관계 서류 (신원조회결과 및 인부사역결의 공문)		
4	· '96년도 인감증명 발급대장		
5	· 원봉로 전입신고서 (사후확인서 포함)		

# 1. '96년도 양성면 사무분장 내역



# 양 성 면

380-86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93-4 / 전화 (0441) 851-3301~2 / 담당 권순성

문서번호 양성 12100 -

시행일자 1996. 1. 3. (준영구)

발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면	장
보존	준영구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권 순 성		협조

제목 '96 개발계 업무분장

'96년도 개발계 직원 업무분장을 아래와 같이 분장하여 업무추진코져 합니다.

직 급	성 명	업 무 담 당	비 고
개발계장	권순성	개발업무 총괄	
지방토목 7급	이장철	관광시설계 파견(시청)	
지방토목 7급	권영균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 간이상수도, 도로, 교량 하천, 하수, 방재, 지역개발	
지방행정 9급	최광희	토지관리, 지적	
지방기능 10급	이상표	녹지, 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 변소, 부엌)	
지방기능 10급	여성철	상수도	
지방기능 10급	지윤근	상수도시설운영	
지방기능 10급	이동우	상수도시설운영	
청원경찰	홍진구	상수도시설운영	
청원경찰	서수원	상수도시설운영	
청원경찰	변시섭	상수도시설운영	
청원경찰	이동원	상수도시설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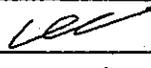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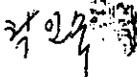
끝.

문서번호 양성 13430 -

시행일자 1996. 1 . 3 (준영구)

수신 내 부 결 제

참조

취급		면	장
보존			
부면장			
계 장		 김동원	
계 원			
기안	이 순 영	 박인숙	
			협조

제목 96년도 재무계 업무분장

96 년도 재무계직원 업무분장을 아래와 같이 분장하여 업무추진코져합니다.

다 음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계 장		이 순 영	재무업무 총괄
자 방 세무 주사 보		김 동 원	지방세부과, 국공유 재산관리업무
지 방 행 정 서기 보		박 인 숙	지방세징수업무, 세외수입에관한업무

끝

수신처 :

안 성 면

우 380 - 360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93 - 4 / 전화(0441) 851 - 3302 담당 박 광 원

문서번호 앙성 12110 - 1193

시행일자 1996. 4. 24.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단 장
보존	5년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박 광 원	협조

제목 인사발령

1. '96. 4. 18. 직제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코자 합니다

- 다 음 -

사회복지계 근무를 명함.  
사회복지계장에 포함.

민원계 근무를 명함.  
민원계장에 포함.

민원계 근무를 명함.

사회복지계 근무를 명함.

총무계 근무를 명함.

민원계 근무를 명함.

~~총무계~~  
사회복지계 근무를 명함.

사회복지계 근무를 명함.

지방농업주사 이 순 영

지방행정주사 안 순 기

지방행정주사보 홍 진 기

지방행정주사보 지 봉 구

지방세무주사보 김 동 원

지방행정서기 정 구 미

지방행정서기보 곽 인 숙

지방기능직10급 이 현 경

1996. 4. 24.

안 성 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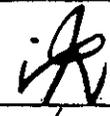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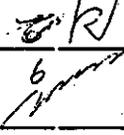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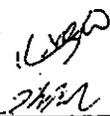
우 380 - 860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93 - 1 / 전화(0441) 851 - 3302 담당 박 광 원

문서번호 양성 12110 -

시행일자 1996. 4. 24.(03)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단	장
보존	3년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박 광 원		
			협조

**제목 총무계업무 분장**

1. '96. 4. 24일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 음

직 위 (직급)	성 명	본 장 업 무	비 고
총무계장	심 덕 일	계업무총괄, 인사, 보안, 선거	
행정 7급	박 광 원	사무, 통계, 학사	
농업 7급	권 혁 길	회계	
세무 7급	김 동 원	국공유재산관리, 부과	
행정 8급	민 복 기	사회진흥, 분공, 문서	
행정 9급	곽 인 숙	지방세징수	
기강 10급	우 임 국	행정차량관리 및 운전	

끝.

[ '96년은 충주 도약발전의 원년입니다 ]

문서번호 양성 65130 - 1228

시행일자 1996. 4. 27. ( 03 )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취급		면
보존	03	관청
부면장		
계장		계원
계원		
기안	지봉구	협조

제목 사회복지계 업무 분장

1996. 4. 24일 인사 발령에 따른 사회복지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 음

직 위 (직급)	성 명	분 장 업 무	비 고
사회복지계장	이순영	계업무 총괄, 청소, 보건,	
지방행정 7급	지봉구	사회, 가정복지, 환경	
지방기능 10급	이현경	청소차 운전 및 관리	

# 양 성 면

우 380-86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93-4 / ☎ 851 - 3301 (영) 3607 전승담당 권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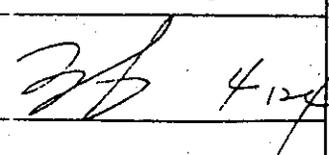
문서번호 양성 12100 -

시행일자 1996. 4. 24 (준영구)

(경유)

반응 내부결재

참조

취급		면 장
보존	준영구	
부면장		
계장	권영관	
계원		
기안	권영관	
		협조

## 제목 개발계 업무분장

'96. 4. 24 인사발령에 따른 개발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직 급	성 명	업 무 담 당
개발계장	권순성	개발업무 총괄
지방토목7급	권영관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 상수도, 도로, 교량, 하천, 하수, 방재, 지역개발
지방행정9급	최광희	토지관리, 지적
지방기능10급	이상표	녹지, 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 변소, 부엌)
지방기능10급	어성철	상수도
지방기능9급	지운근	상수도시설 운영
지방기능10급	이동우	상수도시설 운영
청원경찰	홍진구	상수도시설 운영
청원경찰	서수원	상수도시설 운영
청원경찰	변시섭	상수도시설 운영
청원경찰	이동원	상수도시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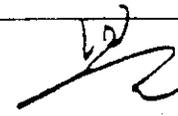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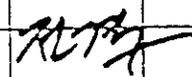
"끝"

문서번호 양성 12110 -

시행일자 1996. 4. 24. ( 03 )

수신 내부절제

참조

취급		장
모름		
부담장		
계장		
계원		
기안	홍진기	

**제목 민원계 업무 분장**

'96. 4.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계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장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 래

직위(직급)	성명	분장업무	비고
호명계장	안순기	호적	
행정 7급	홍진기	병무, 민방위	
행정 8급	장구미	주민등록, 제증명	

끝.

## 2. '96년도 양성면 민원계 사무분장 내역

직 급	성 명	소 관 업 무	제 직 기간	비 고
민원계장	안 순 기	호적업무	92.1.18~98.10.31	퇴 직
행정7급	홍 진 기	병사업무 민방위업무	94.11.2~98.1.15	(현) 가정복지과 근무
행정8급	정 구 미	주민등록 업무, 제증명 업무	93.11.10~97.1.31	(현) 목행동 근무
일 용 직	허 근 영	전산업무 보조 및 제증명업무 보조	92.3.2~96.6.17	해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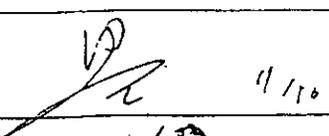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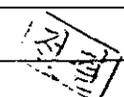
붙 임 : 민원계 업무 분장표 1부.

문서번호 양성 12110--

시행일자 1993 11 10 (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연	장
보급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안순기		

제목 호농계 업무분장

소내 인선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농계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과	팀	장	명	음	소관 업무	의	고
호농계장	안	순	기	호농업무				
지방행정 7팀	홍	진	기	농사업무, 민방위업무,				
지방행정 8팀	정	구	미	주민등록업무, 제증명업무,				
일용직	이	진	영	전산업무보조 및 제증명업무보조,				

양 성 면 장

수신처

### 3. 일용직(허근영)채용관계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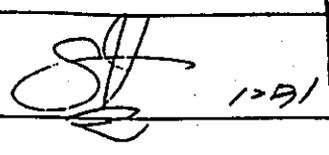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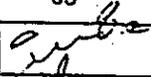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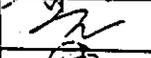
- 신원조회결과 : 없음(확인불가)
- 인부사역결의 공문
  - 주민등록전산보조인부사역결의 : 94. 12. 31
  - 사역기간 : 95. 1. 1 ~ 96. 6. 17(해임)

문서번호 앙성 13210 - 2167

시행일자 1994. 12. 31. ( 05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위급		연	장.
보급	05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정 구 미	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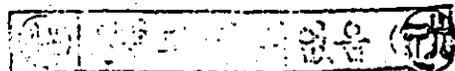
제목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 사역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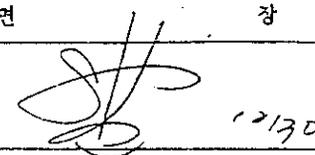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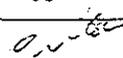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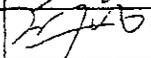
'95년도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보조 요원을 아래와 같이 사역코져 합니다.

1. 사역기간 : '95. 1. 1 - 사업종료시까지
2. 노임지급 : 1일 15,300 (예산지침 및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3. 사역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75 - 9번지	허 근 영	630110 - 1394819

4. 지출과목 :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끝.



문서번호	양성 12410 - 4977	취급		면	장
시행일자	1995. 12. 30. ( 03 )	보존	03		
수신	내부결재	부면장			
참조		계장			
		계원			
		기간	정 구 미	협조	

제목 주민등록 전산관리 요원 사역 결의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산관리 요원을 사역코저 합니다.

1. 사역기간 : '96. 1. 1 - 사업종료시 까지
2. 일일단가 : 예산지침 및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3. 사역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75-9번지	허 근 영	630110 - 1394819	

4. 지출과목 :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끝.

# 양 성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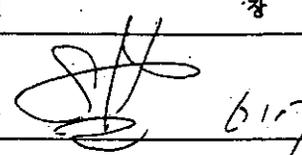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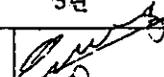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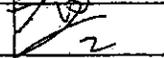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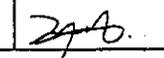
380-86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용포리 93-4 / 전화 (0441) 851 - 3301~2 / 전송담당 정구미

문서번호 양성 13210 -

시행일자 1996. 6. 17.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면 장
보존	5년	
부면장		
계장		
계원		
기안	정 구 미	
		협조

제목 주민등록 전산관리 요원 해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전산관리 요원을 해임코자 합니다.

아 래

1. 해임일시 : '96. 6. 17.
2. 해임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충주시 양성면 둔산리 175-9	허 근 영	630110 - 1394819	

붙임 사직원 1부 끝.

사 직 원

전산보조원 허근영

(88410-1294419)

위 분은 사정에 의하여 본 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청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선

허근



1986년 6월 일

상성현장 귀하

#### 4. '96년도 인감증명 발급대장(사본)

1996

이름은 유은자이다

유은자

98. 3. 25

각시외사관사무시 확인

- 96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인감)대조

# 인감증명서발급대장

결 계장	계	발급번호	발급년월일	증명인		증명신청인		발급 통수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결		1	96. 1. 2	정광호	9101011000000	정광호	9101011000000	/	정광호
진결		2	"	최병호	9101011000000	"	"	/	"
진결		3	"	정영수	9101011000000	"	"	/	"
진결		4	"	최기영	9101011000000	"	"	/	"
진결		5	"	정광호	9101011000000	"	"	/	"
진결		6	"	최종근	9101011000000	"	"	/	정기영
진결		7	"	정수영	9101011000000	"	"	2	정기영
진결		8	"	정기영	9101011000000	"	"	1	정기영
진결		9	"	정영희	9101011000000	"	"	3	정기영
진결		10	"	정영희	9101011000000	"	"	1	"
진결		11	"	정기영	9101011000000	"	"	2	"

# 인감증명발급대장

결	제	발급일	발급번호	발급년월일	중명인		인	중명신청인		발급통수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	진	1. 10	67	김영진	551016	김					김영진
진	진	"	68	박영근	200920	"					박영근
진	진	"	69	유기진	110012	"					유기진
진	진	"	70	정애봉	120022	"					정애봉
진	진	"	71	전미진	110019	"					전미진
진	진	"	72	김도영	110179	"					김도영
진	진	"	73	박영진	130711	"					박영진
진	진	"	74	김영진	120022	"					김영진
진	진	"	75	김영진	120022	"					김영진
진	진	"	76	이영기	130021	"		9119021	9119021		이영기
진	진	"	77	김영진	110201	"					김영진

# 인감증명발급대장

결재장	재계	발급번호	발급년월일	성명	중명		주민등록번호	인인번호	성명	중명신청인		발급통수	비고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령인		
권권	(인)	186	96. 1. 24	공우연	공우연	공	82002 1291106 691212	76002	과	공	1	1/500 500/500/500/500	
권권	(인)	187	"	정홍영	정홍영	정	1393226 570680 1391812	1393226	정	정	3	500/500/500/500	
권권	(인)	188	"	민방권	민방권	민	510322 1391811 1391811	510322	민	민	1	500/500	
권권	(인)	189	"	정재덕	정재덕	정	320602 1391819 360327	320602	정	정	2	500/500	
권권	(인)	190	"	김희주	김희주	김	1392823 547781 511111	1392823	김	김	1	500/500	
권권	(인)	191	"	김희영	김희영	김	680902 1392101 621028	680902	김	김	2	500/500	
권권	(인)	192	"	이영수	이영수	이	1394101 821028 1394101	1394101	이	이	5	500/500	
권권	(인)	193	"	김희숙	김희숙	김	321122 1392813 440111	321122	김	김	1	500/500	
권권	(인)	194	"	김희숙	김희숙	김	1392813 440111	1392813	김	김	1	500/500	
권권	(인)	195	"	김희숙	김희숙	김	440111	440111	김	김	1	500/500	

# 인감증명발급대장

결재장	제계	발급일	발급년월일	중명인		중명신청인		발급통수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권	전권	2.10.19	이도원	220229 / 1344110	이도원	220229 / 1344110	이도원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상희	220229 / 1344110	이상희	220229 / 1344110	이상희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광희	220229 / 1344110	이광희	220229 / 1344110	이광희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경자	220229 / 1344110	이경자	220229 / 1344110	이경자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정민	220229 / 1344110	이정민	220229 / 1344110	이정민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원영	220229 / 1344110	이원영	220229 / 1344110	이원영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220229 / 1344110	이광호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상민	220229 / 1344110	이상민	220229 / 1344110	이상민	1	전권인
전권	전권	"	이성민	220229 / 1344110	이성민	220229 / 1344110	이성민	1	전권인

# 대장금발증명감인

결	재	발	금	발	년	월	일	중		명		인		성	명	성	주	민	동	록	번호	수	형	인	발	금	수	물	고	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계장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권		20	20	20	20	20	20	김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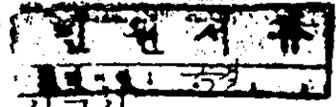
# 인감증명발급대장

결	재	발급번호	발급년월일	종		명		인		중		명		신	청	인	발급	통	고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성
전	전	363	96. 2. 13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540813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1	11	11	11	11
전	전	364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2	2	2	2	2
전	전	365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전	전	366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전	전	367	2. 14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2	2	2	2	2
전	전	368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전	전	369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전	전	370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3	3	3	3	3
전	전	371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2	2	2	2	2
전	전	372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전	전	373	"	이영선	이영선	주민등록번호	441017	주민등록번호	139812	성	과	공	주민등록번호	139812	인	1	1	1	1	1

## 5. 원봉로 전입신고서

- 사후확인서 포함

(친아스물)



(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 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43, 신고일: 96년 2월 2일)

전입지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구성 <input type="checkbox"/> 다른세대로 전입		전세대주 또는 본인	원 봉근 (서명(인))	
	세대주	성명	원 봉근	주민등록번호	26203-100161P	신고인
신국외주이주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26203-100161P	세대주와 관계	본인	
	주소	경주시 양남면 양남리 343				관할면사무소 (양남면)

사유	<input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호적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족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전출지	세대주명	원 봉근		주민등록번호	26203-100161P	
	구분	<input type="checkbox"/> 세대전부 전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input type="checkbox"/>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				
제동거주지	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구성명		전화번호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경계 평택시 전곡면 도내리 6-3 관할면사무소 (황령면)						

전입자인적사항 (남 명, 여 명) \* 기재란이 부족하면 뒷면에 기재합니다.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동장예인	의료보험구분	인감	주민등록증영리
본인	원 봉근	26203-100161P					0

\* 신고처리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산처리	주민등록	인감	병사	민방위	인력등록	학력등록	자동차등록	생활보호	의료보험	의료보험	동장예인	보훈대상	담당자화인	동리장사후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9. 1 심 판 결 문

수정 1998. 2. 23.  
1998. 2.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5. 판결선고	인
1998. 2. 5. 원본영수	

제 6 된 사 부

관 결

사 건 97가합574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 금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

대표이사 김 동 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임진석

피 고 1. 구 분 일 (구 조 절)

서울 은평구 신사동 98의 17 현대아파트 104동 301호

송달장소 의정부코트소 (수감번호 3870)

2. 처 영 관 (출 처 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신한아파트 301동 401호

송달장소 서울구치소 (수감번호 3271)

3. 은 경 설 (보 령 절)

서울 은평구 용암3동 366의 3

송달장소 영동테크노스 (수감번호 3290)

소속법인인 법무법인 상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 함 영

4. 송 주 시

대표자 시장 이 시 중

소속법인인 변호사 박 종 권

판 결 해 설

1997. 5. 8. (피고 구본일, 피고 최영관 외 대학위)

1998. 1. 15. (피고 윤경섭, 피고 송주시외 대학위).

주 문

1. 원고액

가. 피고 구본일, 피고 최영관, 피고 윤경섭은 각각

1,454,000,000원.

나. 피고 송주시는 위 금액 중 피고 구본일, 피고 최영관, 피고 윤

경섭과 각각 금 1,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2. 15.부터 1998. 2. 5.까지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현재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의 의한 배원을

진료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분일, 최영관, 은경섭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이를 17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

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총주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7분

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69,939,697원 및 그 중 금 1,500,000,000

원에 대하여 199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

할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관

결

이 유

1. 손배배상책일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구분일, 피고 최영관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  
송법 제139조의 의하의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은경섭, 피고 총주  
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고발장), 2(감정평가서,  
을 제2호증의 43과 같다), 3(계약금역내대출차입신청동의서, 을 제2호증의 7, 39와 같

다), 4(부동산부담차입신청동의서, 을 제2호증의 3, 4과 같다), 5(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을 제2호증의 9과 같다), 6(신용부담납입계약서, 을 제2호증의 10과 같다), 7(근보증서, 을 제2호증의 11과 같다), 8(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10(인감증명서(찰청발급), 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11(주민등록증사본, 을 제2호증의 16과 같다), 12(주민등록등본, 을 제2호증의 17, 18과 같다), 13(인감증명서, 을 제2호증의 19와 같다), 14(주민등록증사본, 을 제2호증의 20과 같다), 15(인감함파괴장및인감대장원부, 을 제2호증의 21, 22, 25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각 대출금잔표), 갑 제3호증의 1, 2(각 보통의금입금증), 갑 제4, 5호증(각 대출금지급계산서, 을 제2호증의 40과 같다), 갑 제7호증(공소장, 을 제2호증의 73과 같다), 갑 제8호증(진술서, 을 제2호증의 64와 같다), 갑 제9호증(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24, 65와 같다), 갑 제10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25와 같다), 갑 제1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34, 66과 같다), 갑 제12호증(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36, 67과 같다), 갑 제13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44, 70과 같다), 갑 제14호증(판결), 갑 제19호증의 1(집수증명원), 2(백상하 지급신청서), 갑 제20호증(보통의금거래내역), 갑 제22호증의 1(납입청구서), 2(영수증), 갑 제25호증의 1, 2(각 시의통화상세내역서), 갑 제27호증(진술공정증서), 갑 제28호증(판결), 갑 제29호증의 1(인감증명사무원람표지), 2(인감증명사무원람내용), 갑 제30

호종의 1(법규집표지), 2(법규집관리지침), 갑 제31호종의 1, 2(각 신용조사서), 갑 제32호종의 1 내지 5(각 신문기사), 갑 제33호종의 1, 2(제25기결산보고서표시및내용), 갑 제34호종(사업자등록증), 갑 제35호종의 1 내지 3(각 트지이용계획확인서), 4 내지 7(각 트지대장), 갑 제36호종의 1(신용보증기금정보서비스), 2 내지 4(각 불량거래정보), 을 제2호종의 5(고발직접수사상황보고서), 6(고발장), 13(지상권설정계약서), 23(전일신고서, 을 제2호종의 31과 같다), 27(관련자고발), 28(개인별주민등록표), 29(세대별주민등록표), 30(인감신고란), 32(수사참고자료통보), 33(진술서), 37(사실확인서, 을 제2호종의 68과 같다), 42(대출금지급계산서), 47, 48, 50(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종의 48은 을 제5호종의 4와 같다), 49, 54(각 범죄인지서), 51(진술조서), 76(중인신문조서), 을 제6호종(화해조서), 을 제7호종(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주창, 허근영의 각 증언에 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2호종의 45(진술서), 46(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구본일은 위에 십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두축 을 받게 되자 이를 한번에 타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전역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된 피고 최영관을 통하여 인간중매 등을 위조하고 남의 트지에 간접담권을 설정하거나 대

원본을 이원파 본회사기단의 일방인 손과 김종수(이원 파원본), 손과 성명불상자(가짜 원본)를 손거를 받고 이원파부파 계급고급 허위의 인감증명 등 부동산매도출근역 관 한 서류를 이용하고 이러한 사정중 본회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 받아 이 를 권취하기로 작정하였다.

(2) 위 본회사기단의 일방인 손과 성명불상자(가짜 원본)는 위 김종수와 함께 원본인 손의 원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1996. 2. 12. 충청시 산하 양성면사 무소와 가석, 위 양성면사무소의 전산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위 면사무소의 인감증명업무 담당업무원인 손의 정구미의 업무를 보조하던 손의 허근영에게 마치 자기가 진짜 원본 토인 것처럼 행정확인서 위 위조한 위 원본의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위 원본자가 평 로시 렌트업 본년리 6의 3에서 거주하다가 위 양성면사무소의 관내인 충청시 양성면 하 44의 343호에 전입한가를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 기 한편, 위 허근영에게 위 원본의 전 주민등록지에는 위 원본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 새로 전입하면 양성면사무소에서 위 원본의 신규 인감신고를 수리하 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을 원지로 부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보부하였고, 다음날 위 양성면사무소에 찾아와 위 허근영에게 위 위조된 원본의 인장을 제출하면서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3) 소의 허근영은 위 양성근사무소의 인간중립업무 담당업무원인 소의 정구미가 바쁘거나 자의를 비우거나 위 직권 인간대상물 작성하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장이 있을 경우 인간대상물 작성 절차상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위 관할 그 보존자료실의 정구미의 인장을 사용하여 인간대상물 작성 절차상 필요한 위 정구미로부터 사실상 수면 발급 있었는지, 위 상임불상자 등으로부터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간대상물의 발급 신청을 받을 당시 위 정구미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위 정구미에게 인간대상물 작성 절차상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실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채, 불래 위 상임불상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조된 원부리의 인장을 기하여 위 원부리의 인간대상물 작성영무를 처리하면서 신규인감이 이중인감인지 여부를 전출지역서 보류된 관적서류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전출시 담당업무원에게 전화 상으로라도 확인해 보라 등의 절차도 결한 채 위 정구미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인간대상물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250203-1001619'(위 허근영은 위 상임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하연 이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진부 원부리의 주민등록번호는 250203-1001319으로 위 허근영은 위

각각 원부토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적 원부토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성명란에 '원부토', 주소란에 '충주시 양성면 하암리 343',  
전입란에 96. 2. 12., 작성자란에 '지방행정서기 정구미'를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위 성  
명불상자가 제출한 원부토의 인감을, 전입확인란과 작성자의 이름 밑에 인감모양 아무  
말자인 정구미의 인감을 각 밝힌하여 인감대장을 위조하고(한편 위 위조영문 부외  
위 원부토의 전출지로부터 이미 신고되어 있는 기존의 인감대장이 송부되어 오자 위  
위조된 인감대장을 소각하였다). 이와 기하고 위외의 원부토의 인감총액 4통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4) 피고 구본일은 1996. 1. 말경 그 전부터 금융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원고에게  
1,500,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1996. 2. 14.경 위 위조영문 위외와 위와 같이 위조  
된 인감대장에 기하고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4통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가짜 원부토)를 귀동하고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위 원부토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위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4통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면서 원부토를 사칭하여 위 원부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인곡동 994의 5 대  
969.6㎡, 같은 동 995의 7 대 274㎡, 같은 동 1123 대 648.5㎡, 같은 동 1123의 3 대  
981.8㎡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가각 원봉로부터 담보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집  
수 11256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구본일,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같은 법원 집수 제11257호로 원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  
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1996. 2. 15. 피고 구본일에게 대출기한을 3년, 대출원금을  
간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계약금택내대출' 금 800,000,000원, 매월 신용부금과 이자  
를 같이 불입하여 상환하는 '부금담부금대출'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0원  
을 대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 구본일에게 금 700,000,000원의 '부금담부금대출'을  
함께 있어서 피고 구본일과 사이에 신용부금담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구본일로부터  
같은 날부터 36개월간 매월 15일 신용부금을 납입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구본일로부터 같은 날 신용부금 1회 불입금 36,900,000원, 부금담부금 이자 1회분  
금 9,625,000원 합계 금 46,525,000원을 납입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위 대출금  
1,500,000,000원에서 위 납입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고, 또 원고가 피고 구본일을 대신하  
여 지급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생긴 비용인 대출계약 수입인지대 금 250,1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료 금 1,888,0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금 17,903,390원 합계 금  
20,041,4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 1,433,433,510원(1,500,000,000원 - 46,525,000원 -  
20,041,490원)을 피고 구본일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정 과실이 있다기 할 것이요, 한편 인화관 외 인감증명서가 된 원상 제 1차인 의양  
정 원상 제 2차인 의양 제 1차인 것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 조항인 민사소송  
정 원상 제 1차인 것 이므로 원고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관할하였던가 의 미의 상  
정 원상 제 2차인 것 이므로 원고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관할하였던가 의 미의 상  
정 원상 제 1차인 것 이므로 원고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관할하였던가 의 미의 상  
정 원상 제 2차인 것 이므로 원고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관할하였던가 의 미의 상  
정 원상 제 1차인 것 이므로 원고의 관할 조항이 관할을 관할하였던가 의 미의 상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구본일, 최영근, 피고 우경섭의 책임 제한 여부

피고 우경섭은 이 사건 사고원인사고는 원고가 피고 구본일 외 모함 신용  
사를 과실로 하지 않은 과실을 피하하고 상환신용회계 관련 하위 조항 시행규칙 제 2  
제 1항 단서항목에 규정된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구본일 구본일의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과실을 피하한 사실이 있고, 이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초과하여

(2) 피고 충주시의 책임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9(확인서면, 을 제2호증의 14와 같다)

의 기록을 종합하면, 원고등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동기권리중을 소  
지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 받기 바로 전날 주민등록지를 옮겼음이  
위 인감증명 등의 내역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단지당권설정계약서 등  
을 작성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그 주위의 사람들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  
록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채 그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만을 믿고 위 단지  
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구본임에 대한 실질적  
인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  
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충주시의 손해배상책인의 범위를 정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단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차원을 지급하고 입계 되던 손해를, 투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적당전의 채권최고액에 한도로 원고가 위 단적당전환정행사가 우선한다고  
원고 피고 구분일체에게 필요한 부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단적당전의 채권최고액  
이 금 2,250,000,000원이다. 원고가 피고 구분일체에게 '적극관리대출' 금 300,000,000원,  
'부리따부리대출'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0원을 포함한 사실은 반드시 바  
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금 1,5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 구분일체에게 이 사건 피해를 실행하였을 경우 부부  
터 1997. 3. 14.까지 회수하지 못한 약정의융회 다른 약정이자 및 연체료 금  
169,939,697원과 대출원금 1,500,000,000원에 대한 1997. 3. 15.부터 원체일까지 약정연체  
이율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손해액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삼피건  
대, 원고가 구하는 위 약정이자, 연체료 및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금액은 부부인 피고분  
제공하고 원고를 기당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피고 구분일 등의 불법행위가 계기가 되  
어 원고가 그 금액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이익에 지나지 않을 뿐, 위  
사기대출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원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위 사기대  
출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약정이  
자, 연체료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스키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타당한 손해액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구분일, 피고 최영균, 피고 은경섭의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구분일, 피고 최영균, 피고 은경섭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금 1,5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충주시의 손해배상범위

그리고 피고 충주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손해의 발생에는 이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피고 충주시가 위

피고들과 각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금원 중 금 1,200,000,000원

(1,500,000,000원 × 0.8)에 한정된다.

라. 일부 공제

한편, 원고는 1997. 12. 2. 피고 은경섭의 처인 소외 박현경으로부터 이 사건 사

기 대출과 관련하여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금 4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

고 있으므로, 이를 각 공제하면 피고 구분일, 피고 최영균, 피고 은경섭이 각자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은 금 1,454,000,000원(1,500,000,000원 - 46,000,000)원이고, 피고 충주시

가 위 피고들과 각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금원 중 금 1,154,000,000원

(1,200,000,000원 - 46,000,0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보외국, 피보 구본인, 피보 보영관, 피보 손영선은 각각 손해배상금 1,454,000,000원, 피보 송주식은 위 하인 중 위 피보들과 각각 손해배상금 1,154,000,000 원 및 각 이의 대학의 불법행위일인 1996. 2. 15.부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2. 5.까지의 기간 5년의, 그 다음날부의 판결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기간 2 할5년(원보등 이 사건 소장 부분 승할 다음날부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대학의 피 보 특별법 소정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보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의 대학의 피 보 특별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의 각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의 내역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 행선고의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5.

판 사 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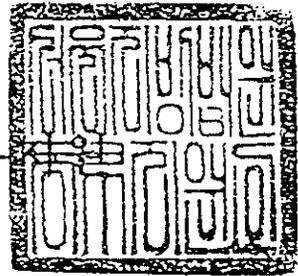
관 사 위 헌 식 위 헌 식 

관 사 윤 경 아 윤 경 아 

정본입니다.

199 . . 1998. 2.18

서울지방법원 동부



법원주사이 제 봉

①

수정일	1999. 6. 1.
항소(심) 마감일	1999. 6. 15.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1999. 5. 19. 판결선고	인
1999. 5. 19. 원본영수	

사 건 98나1307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결 피항소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

대표이사 김 동 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최 재 경, 임 진 석

피고, 피항소인

1. 구 본 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98의 17 현대아파트

104동 301호

송달장소 의정부교도소

2. 취 영 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신한아파트

301동 401호

송달장소 춘천교도소

3. 온 경 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충 주 시

대표자 시장 이 시 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충 근

변 론 종 결

1999. 4. 28.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5. 선고 97가합57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 충주시에게 피고 구본일, 최영

균, 온경섭과 각자 금 1,0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5.부터 1999.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충주시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충주시와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

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구본일, 최영균, 온경섭과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69,939,697원 및 그 중 금 1,500,000,000  
                              원에 대하여 199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구분  
                              일, 최영균, 온경섭은 각자 금 215,939,637원 및 그 중 금 46,000,000원  
에 대하여 199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충주시는 피고 구분일, 최영  
균, 온경섭과 각자 금 515,939,697원 및 그 중 금 346,000,000원에 대하여 199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충주시 : 원심판결 중 피고 충주시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구분일, 최영균과 사이에서는 위 피  
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온경  
섭, 충주시와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고발장, 을 제2호  
증의 6과 같다), 3(계약금액내대출차입신청품의서, 을 제2호증의 7, 39와 같다), 4(부금금부

갈차입신청품의서, 을 제2호증의 3, 41과 같다), 5(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을 제2호증의 9와 같다), 6(신용부금납입계약서, 을 제2호증의 10과 같다), 7(근보증서, 을 제2호증의 11과 같다), 8(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9(확인서면, 을 제2호증의 14와 같다), 10(인감증명서(참칭발급), 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11(주민등록증사본, 을 제2호증의 16과 같다), 12(주민등록등본, 을 제2호증의 17, 18과 같다), 13(인감증명서, 을 제2호증의 19와 같다), 14(주민등록증사본, 을 제2호증의 20과 같다), 15(인감발급대장및인감대장원부, 을 제2호증의 21, 22, 26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각 대출금전표), 갑 제3호증의 1, 2(각 보통예금입금증), 갑 제4, 5호증(각 대출금지급계산서, 을 제2호증의 40과 같다), 갑 제7호증(공소장, 을 제2호증의 73과 같다), 갑 제8호증(진술서, 을 제2호증의 64와 같다), 갑 제9호증(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24, 65와 같다), 갑 제10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25와 같다), 갑 제1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34, 66과 같다), 갑 제12호증(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36, 67과 같다), 갑 제13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44, 70과 같다), 갑 제14호증(판결), 갑 제19호증의 1(접수증명원), 2(배상금지급신청서), 갑 제20호증(보통예금거래내역), 갑 제22호증의 1(납입청구서), 2(영수증), 갑 제25호증의 1, 2(각 시외통화상세내역서), 갑 제27호증(진술공정증서), 갑 제28호증(판결), 갑 제29호증의 1(인감증명사무편람표지), 2(인감증명사무편람내용), 갑 제30호증의 1(법규집표지), 2(법규집관리저침), 갑 제31호증의 1, 2(각 신용조사서), 갑 제33호증의 1, 2(제25기결산보고서표

시 및 내용), 갑 제3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내지 7(각 토지대장), 갑 제36호증의 1(신용보증기금정보서비스), 2 내지 4(각 불량거래 정보), 을 제2호증의 5(고발직접수사상황보고서), 13(지상권설정계약서), 23(전입신고서, 을 제2호증의 31과 같다), 27(관련자고발), 28(개인별주민등록표), 29(세대별주민등록표), 30(인감신고란), 32(수사참고자료통보), 33(진술서), 37(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 68과 같다), 42(대출금지급제산서), 47, 48, 50(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48은 을 제5호증의 4와 같다), 49, 54(각 범죄인지서), 51(진술조서), 76(중인신문조서), 을 제6호증(화해조서), 을 제7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주창, 허근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2호증의 45(진술서), 46(진술조서), 을 제9호증의 2(배상결정서), 3(별지조사결과)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구본일은 타에 십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한번에 타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된 피고 최영균을 통하여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남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는 이른바 토지사기단의 일당인 소외 김종수(이명 조현근), 소외 성명불상자(이하 참칭원봉로라 한다)를 소개를 받고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허위의 인감증명 등 부동산담보물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그 명의로 금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작정하였다.

(2) 토지사기단의 일당인 참칭원봉로는 위 김종수와 함께 위조된 소의 원봉로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1996. 2. 12. 충주시 산하 양성면사무소에 가서, 위 면사무소의 전산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인감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인 소의 정구미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의 허근영에게 마치 자기가 진짜 원봉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원봉로의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원봉로가 평택시 현덕면 도내리 6의 3에서 거주하다가 양성면사무소의 관내인 충주시 양성면 능담리 343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허위의 전입 신고를 하는 한편, 허근영에게 원봉로의 전 주민등록지에는 원봉로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 새로 전입하는 양성면사무소에서 원봉로의 신규 인감신고를 수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고, 다음날 양성면사무소에 찾아와 허근영에게 위조된 원봉로의 인장을 제출하면서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3) 허근영은 양성면사무소의 인감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인 정구미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인감대장 작성 절차상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그 보조자로서 정구미의 인장을 사용하여 인감대장 등의 작성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참칭원봉로부터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을 당시는 정구미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장이 있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정구미에게 인감대장 작성 절차상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의 심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채, 몰래 참칭원봉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원봉로의 인장에 기하여 원봉로의 인감대장 작성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인감이 이중 인감인지 여부를 전출지에서 보내온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전출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상으로라도 확인해 보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도 않은 채 정구미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대장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250203-1001619'(허근영은 참칭원봉로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이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원봉로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250203-1001319로 참칭원봉로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성명란에 '원봉로', 주소란에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343', 전입란에 '96. 2. 12.', 작성자란에 '지방행정서기 정구미'를 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참칭원봉로가 제출한 원봉로의 인장을, 전입확인란과 작성자의 이름 옆에 인감대장 업무담당자인 정구미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인감대장을 위조하고(그 후 허근영은 원봉로의 전출지로부터 이미 신고되어 있는 기존의 인감대장이 송부되어 오자 위 위조된 인감대장을 소각하였다), 이에 기하여 허위의 원봉로의 인감증명 4통을 참칭원봉로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4) 피고 구본일은 1996. 1. 말경 그 전부터 금융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원고에게 1,500,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1996. 2. 14.경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대장에 기하여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4통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참칭원봉로를 대동하고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참칭원봉로는 원고에게 위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4통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원봉로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봉로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994의 5 대 969.6㎡, 같은 동 995의 7 대 274㎡, 같은 동 1123 대 648.5㎡, 같은 동 1123의 3 대 981.8㎡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참칭원봉로로부터 담보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집수 11256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구본일,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같은 법원 집수 제11257호로 원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1996. 2. 15. 피고 구본일에게 대출기한을 3년,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계약금액내대출' 금 800,000,000원, 매월 신용부금과 이자율 같이 불입하여 상환하는 '부금급부금대출'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5) 피고 최영준은 위와 같이 토지사기단의 일당인 참칭원봉로 등을 피고 구본일에게 소개하여 준 후 피고 구본일과 토지사기단과의 연락이나 자금전달을 맡아서 하였고, 피고 윤경섭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면서 토지사기단에 '지급할' 작업비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 구본일에게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외에 위 피고들과 동행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어, 피고 구본일이나 위 토지사기단이 허근영을 통하여 위조한

인감대장에 기하여 부정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참칭원봉로를 대동하여 무효인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도와 주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피고 구분일, 최영균, 은경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구분일, 최영균, 은경섭은 토지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원봉로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봉로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충주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신규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면, 동사무소에 기존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출지로부터 전입자의 주민등록대장, 인감대장

등의 서류가 도착한 후 기존에 신고된 인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 새로운 인감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6호에 의하여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양성면사무소의 전산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인감증명업무를 담당하던 정구미를 보조하던 허근영은 토지사기단의 일당인 참칭원봉로부터 뇌물 금 1,000,000원을 수령하고, 그가 신규인감 신고의 수리와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자, 정구미가 위 인감증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정구미 몰래 독단적으로 원봉로의 인감대장 작성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인감이 이중 인감인지 여부를 전출지에서 보내온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전출지 담당공무원에게 전화상의 확인조차 하여 보지도 않은 채 정구미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인감대장을 위조하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원봉로의 인감증명 4통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급하여 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공무원의 과실에 기하여 위 인감증명서가 위 원봉로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피고 구분일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총주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구본일, 최영균, 은경섭

피고 은경섭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 있어 원고가 피고 구본일에 대한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비롯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한 대출규정과 담보물조사규정 및 신용조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출업무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서둘러 시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피고 은경섭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피고 은경섭을 비롯하여 피고 구본일, 최영균과 같이 타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피고 총주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업무를 무수히 취급해온 원고는 이 사건 거액의 대출을 함에 있어서 참칭원봉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바로 전날 주민등록지를 옮겼음이 위 인감증명 등에 나타나고 있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대출자인 피고 구본일과의 관계 등 그가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가 제출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만을 그대로 믿고 형식적인 소유주 확인조치만을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음은 물론 피고 구본일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충주시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충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원고의 손해액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금원을 대출해 준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구본일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며,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이 유효하였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98다27630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 2,250,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구본일에게 '계약금액내대출 금 800,000,000원, '부금급부금대출'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감정평가서, 을 제2호증의 43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 무렵인 1996. 1.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2,320,487,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그 시가가 위 채권최고액은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게된 손해액은 위 대출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일 이후의 법정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구본일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 구본일과 사이에 2개의 신용부금납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내대출'과 관련된 신용부금 1회 불입금 19,680,000원, '부금급부금대출'과 관련된 신용부금 1회 불입금 17,220,000원 등 합계금 36,900,000원 및 후자의 신용부금 선납이자 금 9,625,000원을 납입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위 대출금 1,500,000,000원에서 위 납입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고, 또 원고가 피고 구본일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생긴 비용인 대출계약 수입인지대 금 250,1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료 금 1,888,0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금 17,903,390원 합계금 20,041,4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 1,433,433,510원(1,500,000,000원 - 36,900,000원 - 9,625,000원 - 20,041,490원)을 대출 당일 피고 구본일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구본일은 그 중 1,250,150,000원을 대출 당일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 구본일이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금 중 현실적으로 그 중 금 1,250,150,000원만을 인출하여 갔으나 나머지 금원들은 위 피고의 보통예금이나 신용부금 계좌에 잔존하고 있어 피고 구본일이 예금 등 계약상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

거나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비용을 원고가 대납한 것을 원고가 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제한 금원이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 1,500,000,000원 전액을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피고 구본일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준 후 1997. 3. 14. 까지 회수하지 못한 약정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및 연체료 금 169,939,697원과 대출원금 1,500,000,000원에 대한 1997. 3.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해 준 것은 피고 구본일 등이 제공하는 근거당권 등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이 그 결정적 원인이었고, 피고 구본일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이자, 연체료 및 약정지연손해금 등은 원고와 피고 구본일과 사이에서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청구, 정산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자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피고들별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구본일, 최영균, 은경섭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금 1,5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총주주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총주사가 위 피고들과 각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금원 중 금 1,050,000,000원(1,500,000,000원 × 0.7)이 된다.

다. 일부 공제

을 제6, 7호중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은경섭의 처인 소외 박현정과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가합17141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사건에서 1997. 8. 25. 박현정이 원고에게 1997. 11. 30.까지 금 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1997. 12. 2. 박현정으로부터 금 4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금원 중 금 1,133,740원은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박현정으로부터 실비변상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화해조항의 하나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지출한 위 소송비용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피고 구본일, 최영균, 은경섭에 대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자 본인이므로 위 피고들이 각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금 150,000,000원에서 위 금 46,000,000원 전액이 공제되어, 금 1,454,000,000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피고 충주시에 대하

에 보면, 앞서의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충주시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고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도 다르므로, 그 경우 불법행위자 본 인측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금원 중 피고 충주시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피고 충주시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등 참조), 피고 충주시가 위 피고들과 각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앞서의 금 1,050,000,000원에서 금 32,200,000원(46,000,000원 x 0.7)원을 공제한 금 1,017,800,000원이 된다.

####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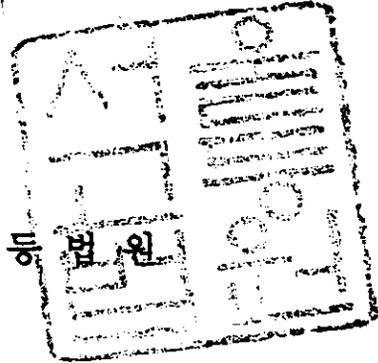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구본일, 최영균, 온경섭은 각자 위 금 1,4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96. 2.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충주시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위 금 1,0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판결 선고일인 1999.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정본입니다.

199 4 년 1 1 월 2 9 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